

연구보고 2007-

#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손희두 · 문성민



#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Finance Law of North Korea

연구책임자 : 손희두(연구위원)

Son, Hee-Doo

협동연구자 : 문성민(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Mun, Sung-Min

2007. 10. 31.



## 국문 요약

한 국가의 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부문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정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재정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생산수단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비교적 순수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수입보다는 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주안점을 두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용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은 재정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의 확충과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법제의 변화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에 뒤따르는 내부경제 시스템의 진화를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재정, 재정법, 국가예산, 금융, 회계, 경제협력, 경제특구

## Abstract

The economy of a country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sectors: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governmental sector). In general, “public finance” is defined to all the economic activities which a nation and public bodies perform to fulfill public needs, and in broad meaning, includes all the economic activities by the governmental sector.

But the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is a far broader concept than the general definition in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countries. In North Korea, “public finance” is defined to an economic issue which is raised in the process where a nation, agencies and companies make, allocate and utilize a monetary fund needed to perform their function. Therefore, though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a similar concept of “public finance” at the viewpoint that the government works as a subjective body of the public financ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the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makes a difference with the concept of the public finance in the market economy where the public finance is defin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only needed to perform the governmental function.

As up to recently, North Korea has stuck to comparatively the pure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where a nation and social cooperative bodies possess all the means of production, North Korea has kept approv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on laying stress on the post control to the expenditure not the revenue in 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But, since 1980s, North Korea has driven the restructuring and opening policy of its economy, leading the Kim Jong-il regime to a change in its

socialistic planned economy system. The whole structure of its public finance law system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such a change. And also, since the July-1 (2002)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were implemented for partially introducing market economy factors to its existing planned economy system, its perception of the public finance law system has largely changed.

It looks like that through improving the public finance law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ontrol and manage to the public finance, eventually, North Korea is planning the enlargement and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This change of the public finance law system is an aspect expressing outside the evolution of the internal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economic innovation of North Korea.

※ Key words : public finance, public finance law, national budget, finance, account, economic cooperation, special economic zone

# 목 차

국문 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1
제 2 장 북한의 재정제도 개요 .....	15
제 1 절 북한 재정제도의 의의 .....	15
1. 재정의 개념 .....	15
2. 북한의 재정과 경제계획 .....	16
3. 북한 재정의 기능 및 특징 .....	24
4. 재정관리의 원칙 .....	30
5. 북한 재정법제의 현황 .....	31
제 2 절 북한 재정제도의 변화 .....	34
1. 김일성사망 이전시기(I-1기) .....	35
2. 고난의 행군시기(I-2기) .....	37
3. 계획경제체제 재정비 추진기(I-3기) .....	42
4. 경제관리 개선시기(II기) .....	44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	57
제 1 절 북한의 재정법과 국가예산수입법 .....	57
1. 재정법의 주요 내용 .....	57

2. 국가예산수입법의 주요 내용 .....	64
3. 남북한 재정법제의 비교 .....	77
제 2 절 북한의 재정법제와 외국인투자 .....	81
1.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일반규정 .....	81
2. 경제특구와 관련한 재정규정 .....	85
제 3 절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	90
1. 재정법제와 회계법제의 관계 .....	90
2. 인민경제계획상의 재정과 회계 .....	92
3. 재정법과 회계법의 조문 비교 .....	93
제 4 절 북한의 재정과 금융법제 .....	102
1. 재정과 금융 .....	102
2.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 .....	107
3. 금융법제의 변화 .....	109
4. 금융법제 개편의 의의와 과제 .....	123
제 4 장 북한 재정의 운용 현황과 과제 .....	129
제 1 절 북한 재정의 운용 현황 .....	129
1. 국가예산의 운용 현황 .....	129
2. 예산수입의 추이 .....	131
3. 예산지출의 추이 .....	139
제 2 절 북한 재정의 평가 및 과제 .....	146
1. 재정관련 개선조치의 의의 .....	146
2. 재정 운용의 문제점 .....	151

3. 재정 운용의 법제적 과제 .....	153
제 5 장 결론: 북한 재정법제의 과제 .....	157
제 1 절 사회주의국가의 재정개혁과 북한 .....	157
제 2 절 북한 재정법제의 과제 .....	159
제 3 절 남북한 교류협력과 재정적 과제 .....	163
참 고 문 헌 .....	165

## 제 1 장 서 론

북한의 재정 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유사하나,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재정은 크게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분배적 기능과,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단위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통제적 기능, 그리고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계획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sup>1)</sup>

북한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법」(199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을 제정한 이후 3차에 걸쳐 개정하였다.<sup>2)</sup> 또한 최근에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제정(2005. 7.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하여 국가재정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재정법」을 비롯한 북한의 재정법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sup>3)</sup> 등 북한의 경제 및 대외개방정책의 추이와 밀

1)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의 기능으로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배분, 경기 조정을 통한 경제안정화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우리나라는 기존의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을 폐지하고, 국가재정에 관한 총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작년(2006. 10. 4. 법률 제8050호)에 제정하였다.

3)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 경제관리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즉, 물가 및 임금 등 전반적 가격의 인상,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의해 기업소·공장 경제활동에 일부 자율권 허용, 무상을 원칙으로 했던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법경제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생산수단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비교적 순수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수입보다는 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주안점을 두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up>4)</sup>을 용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사실상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는 기관·기업소가 늘어났고, 외국과의 합영·합작이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제를 대폭 정비하게 되었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sup>5)</sup>를 비롯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설치에 이들 지역의 기업들에 부과할 조세제도와 그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는 회계법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제도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재정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의 수요변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산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배·이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보면서, 수요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참조.

4)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징으로 경제주체들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자원 등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5) 북한은 2002년 『라선무역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개칭하였다.

으로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들고 있다.<sup>6)</sup> 그리고 최근의 수요변동의 일련의 특징으로 첫째,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수요가 비상이 높다는 것, 둘째,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자금수요가 높다는 것, 셋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민적 시책에 대한 자금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재정부문에서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첫째,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 둘째, 국가예산수입지출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절약예비를 철저히 탐구동원할 것, 셋째, 예산지출보다 예산수입에 균형화 기준의 무게를 둘 것, 넷째, 균형화방법론을 끊임 없이 완성해 나가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인식에 따라 예산자금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정법제 및 회계법제의 개선에 착수한 것이며, 국내의 절약예비를 철저하게 동원하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예산지출보다 예산수입에 재정수지의 기준을 두기 위하여 연성예산제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즉, 회계법제의 개선은 재정의 투명성, 재정법제의 개선은 재정의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재정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재정의 확충과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이러한 재정법제의 변화는 북한 경제체제의 개

6) 홍성남, “현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28면.

7) 홍성남, 앞의 논문 28~29면.

8) 홍성남, 앞의 논문 29~30면.

9) 현대 국가에서 재정의 건전화란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감소시켜 재정적자를 해소하거나 또는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국가의 상황에 맞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유지시켜 재정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 건전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재정수입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 제1장 서론

혁에 뒤따르는 내부경제시스템의 진화를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재정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할 재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는 곧 재정의 확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 제 2 장 북한의 재정제도 개요

### 제 1 절 북한 재정제도의 의의

#### 1. 재정의 개념

한 국가의 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부문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게 된다.<sup>10)</sup> 그런데 북한에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남북한 모두 정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재정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개념과는 차이가 있다.<sup>12)</sup>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 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고업무 이외에는 대체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의 경우 은행은 인

---

10) 정민수, “남·북한 재정기능과 북한재정의 발전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0, 185면 참조.

11)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73면 참조.

12) 이 정의는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재정의 정의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재정을 ‘개인, 가계, 기업 따위의 경제상태’라고 재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재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에서의 재정이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도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상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2면 및 각주 참조.

민경제 모든 부문에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며 재정적 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이며,<sup>13)</sup> 재정은 행기관들과 그에 의한 통제는 재정통제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sup>14)</sup> 금융제도 또한 재정제도에 서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중앙계획기구(국가계획 위원회)가 국가목표를 고려하여 경제적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sup>15)</sup> 재정은 이러한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달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관계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관장하고 있으며,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sup>16)</sup>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재정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 등 국가경제의 활성화 역할에 치중하는 반면, 북한의 재정은 국민총생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활동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17)</sup> 북한의 국민총생산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북한의 재정과 경제계획

### 1) 재정과 경제계획

#### 가. 재정과 재정계획의 관계

북한의 재정에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기능수행을 위한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

---

13)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349면.

14)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9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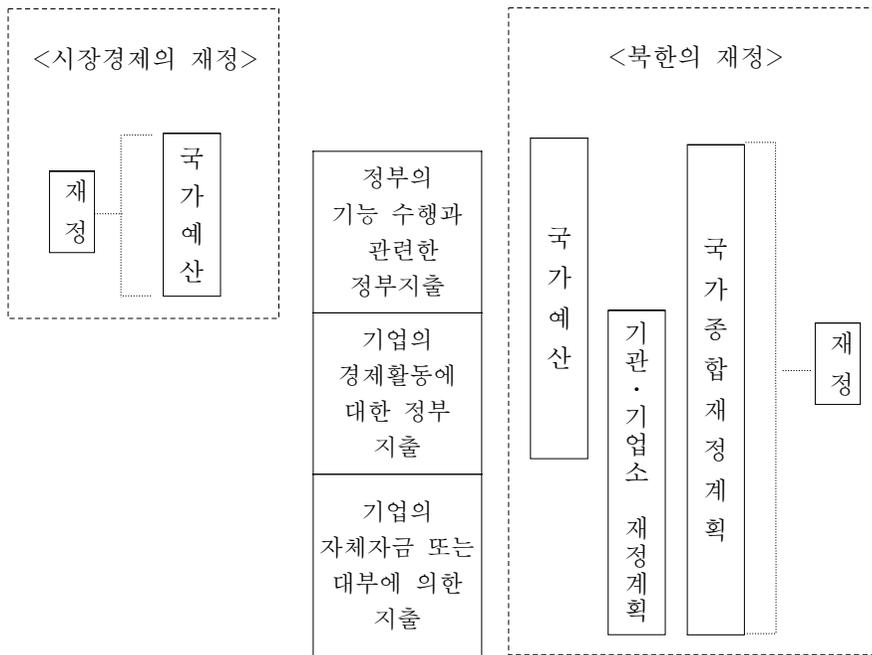
15) 경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법』을 두고 있다.

16)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3, 17면 참조.

17) 정민수, 앞의 논문, 185~186면 참조.

한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소유이며 생산과 분배 등 제반 경제적 과제가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도 직접 수립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세운 국가 및 기업의 경제활동 계획이 인민경제계획이며 이를 자금수급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 재정계획이다.

<그림 1> 시장경제의 재정과 북한의 재정



재정계획은 “국가적 및 인민경제부문, 기업소적 범위에서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타산하여 예견한 법적 과제”를 의미한다.<sup>18)</sup> 여기에는 기업소 재정계획, 경제 부문별 재정계획, 지방별 재정계

18)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78면. 김일성 주석은 “인민경제계획도 법이며 국가재정예산도 법입니다”라고 교시했다고 한다. □□김일성저작집□□

획, 각 재정계획을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한 국가종합재정계획, 국가종합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 국가예산(또는 기본재정계획)<sup>19)</sup>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계획’이다.

#### 나. 국가예산

국가예산(또는 기본재정계획)은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라고 정의되며<sup>20)</sup> 여기에는 국방이나 국가관리, 사회보장 등을 위한 예산과 공업, 농업, 상업 등 각 경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자금이 포함될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고정재산 건설 및 개·보수비용 등도 포함된다. 한편, 국가예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운영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다.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된다.<sup>21)</sup> 중앙예산은 국가가 전 국가적인 정책의 실시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 및 이용하는 예산이며 지방예산은 일정한 행정지역 단위의 범위에서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형성하고 분배, 이용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지방예산의 수입은 해당 지역의 지방예산소속 기관·기업소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국가기업이득금을 비롯하여 중앙 기관·기업소가 납부하는 지방유지금, 국가재산 판매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예산의 지출에는 지방적 의의를 갖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 시책에 대한 지출, 지방기관들의 관리유지비 지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의 공업, 농업, 상업,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발전을 위해 지출된다. 한편 북한의 지방분권화 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예산 규모를 알 수

12권, 222면, 앞의 사진 같은 면에서 재인용.

19) 북한 재정법 제9조는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 계획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48면.

21) 재정법 제11조.

있는 1984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볼 때 80년대의 지방분권화율<sup>22)</sup>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1>참조).<sup>23)</sup>

< 표 1 > 중앙 및 지방재정의 남·북 비교

연 도	남한(억원)				북한(북한만원)			
	중앙재정		지방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76	27,343	81.3	6,283	18.7	1,007,541	79.8	255,042	20.2
1977	35,289	79.8	8,956	20.2	1,008,677	73.2	370,223	26.8
1978	47,703	78.7	12,875	21.3	1,328,960	84.9	236,770	15.1
1979	63,365	76.9	19,036	23.1	1,487,106	85.1	260,684	14.9
1980	82,884	77.7	23,753	22.3	1,637,598	85.6	267,325	14.4
1981	103,528	77.8	29,495	22.2	1,744,196	84.3	323,804	15.7
1982	115,979	77.4	33,864	22.6	1,922,177	84.8	345,823	15.2
1983	122,844	73.0	45,378	27.0	2,061,067	84.5	377,293	15.5
1984	133,766	68.5	61,510	31.5	2,218,883	84.4	411,627	15.6
1985	158,915	73.3	57,790	26.7	..	..	..	..
1986	172,328	74.4	59,448	25.6	..	..	..	..
1987	191,569	76.1	60,286	23.9	..	..	..	..
1988	225,173	77.3	66,225	22.7	..	..	..	..
1989	269,967	76.8	81,383	23.2	..	..	..	..
1990	325,369	72.9	120,813	27.1	..	..	..	..
1991	393,669	70.5	165,098	29.5	..	..	..	..
1992	438,421	67.5	211,399	32.5	..	..	..	..
1993	511,879	69.3	226,930	30.7	..	..	..	..
1994	623,211	68.8	282,835	31.2	..	..	..	..
1995	729,150	72.7	274,219	27.3	..	..	..	..
1996	837,052	71.7	330,473	28.3	..	..	..	..
1997	924,642	70.9	379,351	29.1	..	..	..	..
1998	1,054,505	73.6	377,550	26.4	..	..	..	..
1999	1,145,482	75.4	372,970	24.6	..	..	..	..
2000	1,239,155	72.9	460,357	27.1	..	..	..	..
2001	1,374,808	75.4	447,396	24.6	..	..	..	..
2002	1,452,499	77.8	414,453	22.2	..	..	..	..
2003	1,628,435	71.6	646,001	28.4	..	..	..	..
2004	1,594,343	73.0	589,113	27.0	..	..	..	..

주 1)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세출순계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이며 지방재정은 세출에서 중앙재정 및 타지방재정에서의 의존수입을 제외한 규모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박진, □□북한재정의현황과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1994 참조

22) 지방분권화율(%) = 지방정부의 지출/정부부문의 총지출 × 100

23)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율은 25~30% 정도이며 이전재정을 감안하면 40%수준이 된다(<표2> 참조).

< 표 2 > 이전재정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중앙 재정		지방 재정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자체수입	이전재정		
1990	279,511	62.6	166,671	120,813	45,858	37.4
1995	614,643	61.3	388,726	274,219	114,507	38.7
2000	1,016,222	59.8	683,290	460,357	222,933	40.2
2001	1,098,604	60.3	723,600	447,396	276,204	39.7
2002	1,123,779	60.2	743,173	414,453	328,720	39.8
2003	1,285,796	56.5	988,640	646,001	342,639	43.5
2004	1,300,691	59.6	882,765	589,113	293,652	40.4

주 1) 중앙재정은 세출순계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이전재정을 제외한 규모임.

이전재정은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 다. 기업소 재정계획

기업소 재정계획은 “기업소들에서 계획기간에 이루어질 화폐자금의 수입 및 지출 방향과 그 규모를 예견한 법적 과제”로서<sup>24)</sup> 개별 기업소가 작성하며 국가종합재정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이는 기업소 기본 재정계획, 기업소 부문별 재정계획, 계획 작성을 위한 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소 기본 재정계획은 기업소의 경영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입·지출 종합표로서 기업소의 화폐수입 및 지출, 국가예산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소 부문별 재정계획은 수입·지출 종합표에 나타난 기업소 전반의 재정활동을 판매수입 및 분배, 생산물의 원가, 자금 조달 및 이용 등 부문별로 나누어 작성된 계획이다. 계획 작성을 위한 지표에는 재정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상품생산액, 건설 투자액, 종업원 수와 그 구성, 임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소의 재정계획은 기업소의 경영형태에 따라 독립채산제 기업소 재정계획과

24)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296면.

예산제 기관·기업소의 경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5)</sup>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경우 생산수단에 해당하는 고정재산(자산, 건물 및 기계설비 등)의 건설 및 개·보수는 국가예산<sup>26)</sup>에서 지원되는 반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유동재산(자산, 원자재 등) 구입 및 임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자금이나 부족한 경우 은행대부로 충당해야 한다. 예산제 기관·기업소의 경우에는 모든 자금을 국가예산(사회·문화 시책에 대한 지출 등)에서 지원받으며 이를 경비예산이라 한다.<sup>27)</sup>

## 2) 재정계획의 작성 및 집행

### 가.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계획의 작성

국가예산은 인민경제계획<sup>28)</sup>을 근거로 작성되며 기업소 재정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계획 작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민경제계획 수립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25) 북한 재정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25조). 『재정법』 제30조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하여,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26) 북한에서는 고정재산의 건설, 단순재생산, 확대재생산 자금을 대한 예산지원 항목을 기본건설자금이라 하며 고정재산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 예산지원 항목을 대보수자금이라 한다.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대분류 항목으로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에 해당한다.

27) 경비예산이라는 용어는 국가예산 항목명이 아닌 별도의 용어이다.

28) 인민경제계획은 현행계획(1년 이내의 단기계획)과 전망계획(2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계획의 작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에 잘 나타나 있으나 전망계획의 작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정은 2001년의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으로 다소 수정되었는데,<sup>29)</sup>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다.

제1단계는 『기초자료』 준비 단계이다. 국가계획기관(국가계획위원회)과 각 기관·기업소·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추세, 자연부원 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12조).

제2단계는 『준비사업』 단계이다. 국가계획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반기 안으로 인민경제현행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하는데, 이 경우 현존생산공정의 정비 및 이용안, 생산추진 및 기술개건안과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 물자교류안 같은 것을 준비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16조).

제3단계는 『기술합의』 단계이다. 인민경제계획은 아래로부터 맞물려 올라오는 방법으로 작성하는데,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계획지표에 대하여 기술합의를 하고 서로 수요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17조).

제4단계는 『계획초안』 작성단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수요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출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18조).

마지막은 『계획의 비준 및 시달』 단계이다. 작성된 인민경제계획 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의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sup>30)</sup>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29)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되었다.

30)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 23조).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인민경제계획법 제24조).

국가예산은 인민경제계획의 한 부분인 국가종합재정계획<sup>31)</sup>을 기초로 내각의 재정성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다. 인민경제계획 작성 4단계에서 국가 종합재정계획 초안을 비롯한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할 때 국가예산도 함께 편성하기 시작하며 편성된 국가예산은 매년 3~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지방예산은 최고인민회의가 승인한 지방예산의 총계 범위 내에서 지방인민위원회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편성하며 지방인민회의가 이를 심의, 승인한다.

#### 나. 국가예산의 집행 및 결산

국가예산의 집행은 기업소들로부터 조성된 수입을 받아들이는 예산 수입 과정과 예산자금을 지출하는 예산 지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산 수입은 기업소 순소득과 기타 수입을 근거로 조성되며 이 중에서 국영 기업소 순소득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을 이룬다. 사회주의 기관·기업소·협동단체들은 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며 모든 예산 수입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은행은 수납한 예산에 대해 항목별 통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재정기관<sup>32)</sup>에 보고한다. 각급 재정기관들은 이 통계표를 근거로 각 기관·기업소의 예산 납부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 지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해당 재정기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집행한다. 예산 지출은 재정기관이 세

---

31) 국가종합재정계획은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화폐자금뿐 아니라 기관·기업소의 화폐자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계획으로서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32) 재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각의 재정성, 지방정권기관의 재정부서, 기관·기업소의 재정부기부서, 내각의 나머지 성 및 관리국의 재정부서 등이 포함된다.

운 예산자금 공급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과 한도를 세우지 않고 재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공급 한도에 기초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주로 예산제 기관들에 대한 경비예산 지출에 이용되며 재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등에 적용된다.

예산 결산은 월, 분기, 반기, 연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내각의 각 성 및 지방 정권기관은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월, 분기, 반기, 연간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수입·지출 상황을 점검하며 내각 전원회의에서는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국가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가예산 전체에 대한 연간 결산의 최종적인 심의·승인은 매년 3~4월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연간 결산서는 각 성 및 지방 정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내각의 재정성이 작성하여 내각 전원회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에 보고된다. 이 때 지방예산에 대한 연간 결산서는 각급 지방인민회의의 심의·승인을 거쳐 재정성에 제출된다.

### 3. 북한 재정의 기능 및 특징

#### 1) 재정의 기능

북한은 사회주의 재정이 분배기능과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배적 기능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분배하는 기능이며, 통제적 기능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통제기능이다.<sup>33)</sup>

분배기능은 자원배분 기능과 소득분배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분배기능 수행에 있어서 생산적 축적(투자) 우선 원칙과

33)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681면.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 생산적 투자 우선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재정법<sup>34)</sup> 제15조에서는 국가예산을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부문, 특히 기간공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은 생활비자금 지급을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통제기능은 국가가 재정활동을 통하여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에서는 이를 ‘재정통제’라 한다. 재정통제는 자금의 흐름을 이용한 통제라는 점에서 법적 통제나 행정적 통제와 구별되며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기관들이 진행하는 통제라는 점에서 은행통제와도 차이가 있다.

재정통제는 ‘일상적인 재정통제’<sup>35)</sup>와 ‘재정검열’로 구분된다.

일상적인 재정통제는 기관·기업소의 재정담당부서나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실시하는 통제이며 재정검열은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 상황과 재정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일종의 사후통제이다.

재정검열은 검열 주체에 따라 국가 재정검열과 자체 재정검열<sup>36)</sup>로 구분된다. 국가 재정검열은 국가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내각 및 지방 정권기관, 은행 등이 실시하며 이 중에서 은행의 재정 감독 검열부서들에 의한 재정검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재정통제의 목적은 모든 경제분야에서 절약을 강화하고 노동력, 설비, 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계획을 완수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기업소가 재정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외에 북한의 재정에는 계획기능도 있다. 북한의 재정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계획의

34) 국가예산 및 기관·기업소 재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1995년 8월 30일 제정되었으며 1999년, 2002년, 2004년 등 세 차례 수정·보완되었다.

35) 북한은 일상적인 재정통제를 ‘정상적인 재정통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36) 북한은 자체 재정검열을 사회적 재정검열이라 한다.

일부분이며 따라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바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된다.

이와 같이 분배기능, 통제기능, 계획기능 등으로 설명되는 북한의 재정과 달리 시장경제 하에서의 재정의 역할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 3가지로 구분되어 북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재정의 특징

북한 재정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재정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재정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성을 포함한 내각의 각 성이 중심이 되어 작성될 뿐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까지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작성되고 있으며 집행 및 결산 등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에 의한 관리’ 또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독립채산제와 지방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관리방식으로서 194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sup>37)</sup> 지방예산제는 197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sup>38)</sup> 독립채산제나 지방예산제는 모두 국

37)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단순히 기업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국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재정관리의 기본요구이다. 독립채산제 기업소 재정관리의 중요한 과업은 창조된 내부축적을 국가기업이득금의 형태로 국가에 동원하는 데서 국가적 이익과 기업소의 이익,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를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박준화, “독립채산제기업소재정관리에서 국가적이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32~33면.

38)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 밑에 지방이 자체로 살림살이를 운영해 나가는 예산제도이다. 지방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은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영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적 계산 단위에 불과하다. 독립채산제나 지방예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이나 지방 정권기관은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자율권이 거의 없으며 단지 편성된 예산의 집행상황을 관리하는 단위에 불과하다. 결국 독립채산제나 지방예산제는 기업별 또는 지역별로 예산 집행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을 중용하여 예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종합예산제도는 1938년에 구소련에서 처음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정권수립 전인 1947년도 예산편성부터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셋째, 북한은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표 3> 참조). 우리나라에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재정규모에 대한 분석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적자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추정치일 뿐 정확하지는 않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은 ‘국가채무’에 관하여 국가가 진 빚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제도에서 재정은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나라의 경제활동으로서 수입과 지출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조성되는 현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채무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9)</sup> 넷째, 북한은 경제규모에 비해 재정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북한의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sup>40)</sup>은 1980년대까지는 70%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크게 높아져 1993~94년에는 90%를 넘기도 하였다.

39)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46면.

40)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 = 예산지출총액 / GNI × 100

&lt; 표 3 &gt; 북한의 재정 규모

(단위: 만원)

연 도	예 산	결 산		
		수 입	지 출	재정수지
1965	372,172	357,384	347,613	9,771
1970	618,662	623,220	600,269	22,951
1971	727,727	635,735	630,168	5,567
1972	737,480	743,030	738,861	4,169
1973	854,351	859,686	829,741	29,945
1974	980,121	1,000,525	967,219	33,306
1975	1,151,720	1,158,630	1,136,480	22,150
1976	1,251,321	1,262,583	1,232,550	30,033
1977	1,367,215	1,378,900	1,334,920	43,980
1978	1,529,320	1,565,730	1,474,360	91,370
1979	1,730,132	1,747,790	1,697,260	50,530
1980	1,889,360	1,913,923	1,883,691	30,232
1981	2,047,890	2,068,400	2,033,300	35,100
1982	2,254,600	2,268,000	2,220,360	47,640
1983	2,433,500	2,438,360	2,401,860	36,500
1984	2,630,670	2,630,510	2,615,800	14,710
1985	2,738,360	2,743,887	2,732,883	11,004
1986	2,848,154	2,853,850	2,839,610	14,240
1987	3,030,780	3,033,720	3,008,510	25,210
1988	3,185,210	3,190,580	3,166,090	24,490
1989	3,355,070	3,360,810	3,338,294	22,516
1990	3,565,610	3,569,041	3,551,348	17,693
1991	3,712,060	3,719,484	3,690,924	28,560
1992	3,950,092	3,954,042	3,930,342	23,700
1993	4,044,985	4,057,120	4,024,297	32,823
1994	4,152,519	4,160,020	4,144,215	17,785
1995	..	2,430,000	2,420,000	10,000
1996	..	2,032,000	2,060,000	△28,000
1997	..	1,971,195	..	..
1998	2,020,603	1,979,080	2,001,521	△22,441
1999	2,037,828	1,980,103	2,001,821	△21,721
2000	2,040,532	2,090,343	2,095,503	△5,160
2001	2,157,080	2,163,994	2,167,865	△3,871
2002	2,217,379	2,228,466	2,212,944	15,522
2003	32,936,900	33,232,356	32,344,900	887,456
2004	35,126,600	33,754,600	34,880,700	△1,126,100
2005	38,859,000	39,188,000	40,570,000	△1,382,000
2006	41,970,142	40,912,213	41,928,172	△1,015,959
2007	43,323,509	—	—	—

주 1) 2002년 결산 이후 등 일부 수치는 북한이 발표한 전년대비 증가율 및 계획대비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수치임

2) 1995, 1996년도 수치는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1997에서 인용

자료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IMF(1997), 노동신문 등

1995년 북한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비중도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1년 다시 상승하여 62.4%를 보이고 있다. 이는 30%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1970~80년대(60~80%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표4, 5> 참조).<sup>41)</sup>

< 표 4 > 주요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재정부담률 추이

(단위: %)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소련
1970	65.9	64.5	62.4	52.0	54.1
1975	68.1	80.5	79.5	53.4	60.2
1980	63.0	85.9	72.8	69.3	65.0
1995	39.4	33.5	30.8	30.3	29.4

자료 : 통일부 보도자료(1999.9.17)

< 표 5 > 재정부담률의 남·북 비교

(단위: %)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80	28.8	77.2	1996	27.9	..
1985	27.4	74.2	1997	28.9	..
1990	24.9	71.9	1998	32.8	72.2
1991	25.8	75.1	1999	31.9	58.2
1992	26.5	87.7	2000	32.7	57.1
1993	26.7	91.2	2001	33.1	62.4
1994	28.1	90.6	2002	31.3	-
1995	26.7	..			

주 1) 재정부담률=(중앙 및 지방정부 세출/GNI)\*100

2) 2001년 자료는 예산(발표치) 기준임

자료 : 통계청, 통일부

41) 7.1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부담률이 2004년 현재 12.2% 수준으로 하락하여 재정 규모, 환율, 경제규모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 4. 재정관리의 원칙

북한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sup>42)</sup>

첫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사회주의재정의 정확한 관리운영과 관련한 근본입장과 방향, 방도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는 사회주의재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 성격에 맞는 사회주의재정의 사명과 임무, 기능 등과 함께 그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분배, 재분배하고 재정규율과 통제를 강화하며 원활한 자금순환을 보장하고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 관리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유일관리제는 두 측면에서 실현되는데, 한 측면은 국가가 모든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며, 다른 한 측면은 국가의 법과 규정 그리고 유일한 국가계획과 기준에 따라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재정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을 비롯한 모든 재정계획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려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재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42)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679~680면.

## 5. 북한 재정법제의 현황

북한 헌법상 재정에 관한 규정은 그리 많지 않으며, 재정에 관해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은 제35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예산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할 것과, 증산과 절약, 그리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재정관련 조항으로는 최고인민회의의 국가예산과 그 집행형태에 대한 심의·승인권(제91조제15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승인권(제110조제3호), 내각의 국가예산 편성권(제119조제6호), 지방인민회의의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관한 심의·승인권(제134조제2호),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방예산편성권(제141조제7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과 같은 납세의 의무나 조세법률주의,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예비비, 국채 등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헌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재정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재정관련 법제로는 <표6>에서 보다시피 재정에 관한 일반법인 재정법, 재정수입과 관련한 총괄법률인 국가예산수입법, 무역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재정수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관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이 있다.

또한 재정계획도 인민경제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계획법도 재정의 운용과정을 통제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그 외에 가격법, 중앙은행법, 발권법, 화폐유통법, 외화관리법, 회계법 등

도 넓은 의미에서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수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재정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관리규정들은 사회주의재정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기본수단이며, 재정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이기 때문이다.<sup>43)</sup>

최근의 북한 재정법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예산수입법』의 제정이다. 『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의 납부,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마련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는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표 6 > 북한의 재정 관련법

분 야	법 령	제·개정 사항
경제계획 총괄법	인민경제계획법	- 1999.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 2001. 5. 17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일반법	재정법	- 199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2002. 5.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 2004. 4.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재정수입 총괄법	국가예산수입법	- 2005. 7.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43) 홍영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재정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33~34면.

분 야	법 령	제 · 개정 사항
무역 및 외국투자 관련 재정 수입법	세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 10. 1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li> <li>- 1987. 2. 2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호로 수정보충</li> <li>- 1990. 5.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li> <li>-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li> <li>- 1999. 1. 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li> <li>- 2001. 7.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6호로 수정보충</li> <li>- 200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70호로 수정보충</li> </ul>
	토지임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li> <li>-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li> </ul>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li> <li>-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li> <li>- 2001. 5.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li> <li>- 2002. 11. 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li> </ul>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로 채택</li> <li>- 2002. 6. 14 내각결정 제39호로 수정</li> <li>- 2002. 12. 26 내각결정 제88호로 수정</li> </ul>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9. 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li> </ul>
기타 재정 관련법	중앙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9. 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li> </ul>
	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 3.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li> <li>2003. 3. 26 최고인민회의 법령제14호로 승인</li> </ul>
	가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 1. 2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li> <li>-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li> <li>- 1999. 8.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li> </ul>
	발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 12.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li> <li>- 1999. 3.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li> </ul>

## 제 2 절 북한 재정제도의 변화

북한은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경제 회생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 중에서 재정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재정관련 제도는 7.1조치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7.1조치로 인해 부분적인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문에서도 연성예산제약을 지양하고 회계 및 금융제도의 정비를 기반으로 한 재정법제의 제도화 수준을 크게 개선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이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를 7.1조치의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고, 7.1조치 이전시기를 다시 세 시기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44)</sup>

즉, 7.1조치 이전시기를 <Ⅰ-1기> 국가예산을 확대하고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관련 제도를 개편하려 했던 김일성사망 이전시기(1990~94), <Ⅰ-2기> 김일성사망 이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계획경제체제 와해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고난의 행군시기(1995~97), <Ⅰ-3기>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1997. 10. 8) 이후 계획경제체제 재정비를 추진했던 시기(1998~2001) 등 3기로 구분하고, 7.1조치 이후인 <Ⅱ기> 계획경제체제 재정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리추구를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경제관리 개선시기(2002~ )를 포함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4) 1990년 이전의 북한 재정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국가예산 제도는 1946년 제정된 『회계규정』과 1948년에 제정된 『행정기관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입 시행되었다. 1964년에는 국가가 모든 자금을 중앙은행을 통해 유일적으로 공급하는 유일적 자금공급체계가 완성되었으며 1974년에는 주민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재정제도가 만들어졌다.

## 1. 김일성사망 이전시기(I-1기)

1990년대 초 북한 경제는 구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와 1989년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한 과다투자의 후유증으로 본격적인 경제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북한의 초기대응은 기존의 경제관리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대외개방은 나진·선봉 자유 무역경제지대 건설(1991) 등 다소 적극적이었으나 대내적인 변화로는 그동안 지속해 오던 중공업 우선정책 대신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인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제시하는 정도이다. 재정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국가예산을 확대하고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예산지출 확대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시장경제부문이 확산되는 등 계획경제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92년 3월 임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농산물의 국가수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 농민들의 수입을 늘려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국가예산 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예산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sup>45)</sup>

1992년 3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근로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와 사회보장자들의 사회보장연금, 학생들의 장학금을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국가적 시책을 실시한다.

---

45) 실제 예산규모는 1992~94년중 각각 6.5%, 2.4%, 3.0% 증가에 불과하였다. 결국 임금인상 등이 북한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다만, 북한예산이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1. 근로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 높인다.
2. 사회보장자들의 사회보장연금을 평균 50.7% 높인다.
3. 대학,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평균 33% 높인다.
4. 협동농민들의 분배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국가수매가격을 벼는 26.2%, 강냉이는 44.8% 높이며 그 밖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가격을 높인다.
5. 주민식량공급가격은 변동 없이 지금대로 적용한다.

### 2) 화폐교환을 통한 계획경제체제 정비

북한은 시장경제부문의 확산과 1992년 3월의 임금인상 등으로 늘어난 유희화폐자금 및 퇴장화폐를 회수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화폐권종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979년 화폐교환 이후 사용하던 은행권(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하였다.

북한은 화폐교환을 실시하면서 화폐교환 한도액을 정해 교환해 주었으며 한도액을 넘는 돈은 중앙은행에 입금시킨 후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였다. 또한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구화폐를 모두 은행에 입금시키고 필요한 만큼 새 돈을 받아가도록 하였다.

### 3) 거래수입금 부과대상 확대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예산수입이 줄어든 데다 1992년 3월 조치로 임금 및 사회보장비 등의 예산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소들이 생산한 소비품 이외에 생산수단<sup>46)</sup>에 대해서도 거래수입금을

46) 생산수단은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들의 총체로서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수단은 건물이나 도구, 기계 따위처럼 노동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를

부과하였다.

북한의 오선희는 이 조치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기업소에 대해서도 독립채산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sup>47)</sup> 국가예산수입을 제 때에 안정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생산수단에 대한 거래수입금 부과는 독립채산제 실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예산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 2. 고난의 행군시기(I-2기)

김일성사망(1994.7.8)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스스로 규정할 만큼 어려운 시기(1995~97)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국가배급 및 공급체계가 붕괴되어 기관·기업소에 대한 원자재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어려워진 상황에 맞게 재정관련 제도를 현실화하여 기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기업소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로 필요자금을 충당하는 새로운 자금조달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

### 1) 예산지원 축소 및 기업 내부유보 확대

북한은 국가예산에 의한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기업소의 유동자금과 일부 기본건설자금을 자체자금 또는 은행대부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

의미하며 노동대상에는 토지, 산림, 지하자원 등 자연 그대로의 것과 면사(綿絲), 철강(鐵鋼) 등 가공된 것이 있다.

47) 오선희에 따르면 거래수입금은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수익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수익성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높은 기업소는 경영개선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며 수익성이 낮아 손실을 보는 기업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수입금을 기업소별로 달리 설정하여 각 기업소의 수익성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 각 기업소에 대한 평가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선희, “거래수입금의 제정 및 적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북한의 홍영의는 국가재정에 의한 자금보장방식에서 은행신용에 의한 자금보장방식으로의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재정계획화체계’에서 ‘신용계획화체계’로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제도의 변화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5년 북한은 연합기업소<sup>49)</sup> 제도를 전 산업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자체자금에 의한 유동자금 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발행된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동자금에 대한 국가공급제도를 없앴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1985년 발행된 북한의 경제사전에는 계획수행에 필요한 유동자금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고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도의 변화 시기는 1985년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85년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연합기업소에 대한 설명에서 북한의 한득보는 연합기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국가가 공장·기업소의 생산설비와 자재를 모두 보장해 주면서 경영활동을 장악, 통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연합기업소 제도의 확산과 자금보장방식의 변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위협을 느끼게 된 북한은 이와 같은 변화를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으로 보고 제도 변화를 유보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김일성이 경제학

48) 홍영의, “대부수요계획 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49) 연합기업소는 생산기술이나 관리상 긴밀한 연관이 있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중앙 행정기관과 개별기업을 연결시키는 중간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1970년대 말부터 금속·화학·광업 부문에서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경에는 건설 분야로, 1979년에는 기계공업부문으로 확산되었고 1985년부터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어 북한 경제관리기구의 핵심적 중간 고리로 등장했다.

50) 문성민, 앞의 논문, 25면.

자들에게 한 담화(1990.4.4)인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 할 데 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sup>51)</sup>

이처럼 일시적으로 유보되었던 새로운 자금보장방식은 김일성사망(1994)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의 통제력 상실 등으로 국가예산 수입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국가예산에 의한 기업소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어 자금보장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절반으로 축소된 북한의 예산규모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으며 북한의 학자 리원경도 1990년대의 국내외 정세 변화로 기업소의 유동자금수요를 기업소 자체자금과 은행 대부로 충당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sup>52)</sup>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한다.

#### 가. 유동자금<sup>53)</sup> 공급제도 폐지

북한은 1995년을 전후하여 그동안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던 독립채산제 기업소 유동자금을 기업소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로 충당하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제도개선 이전의 유동자금공급은 기본건설자금공급과 함께 인민경제비 지출(예산의 대분류)의 기본을 이루었던 주요항목이었다. 이 시

51) “일부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려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원료, 자재를 다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큰 공장들에서는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원료, 자재를 얼마 쓰지 않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 같은 데에서는 기업관리를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쇄돌, 석탄, 중유 같은 것을 많이 쓰는 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52) 리원경, “인민경제적자금수요해결의 원칙적방도”,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27~29면.

53) 북한의 경제사전은 유동자금을 “유동재산과 유통재산에 투하된 자금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동재산은 원료, 자재, 연료 등과 같이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소비되어 새로 창조되는 생산물에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통재산은 유통과정에 있는 기업소 재산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기 독립채산제 기업소는 필요한 유동자금을 ①국가예산에 의한 유동자금공급, ②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유동자금 조절펀드에 의한 지원, ③은행 대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였다.

국가예산에 의한 유동자금공급은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동자금수요나 신생 기업소의 유동자금수요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동자금 조절펀드’에 의한 지원은 계획 외의 추가적인 유동자금수요 중에서 기업소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수요에 대한 보충적 자금공급이다. 예를 들면 계획변경에 의해 생산이 늘어난 경우, 자재가 계획보다 먼저 도착했을 경우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자금은 자금지원 필요성이 없어지면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자가 없는 무상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기업소가 경영활동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추가적 자금수요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북한의 경제사전에서는 “국영기업소의 유동자금 형성 원천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국가자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sup>54)</sup> 제도변경 이전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유동자금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예산이나 유동자금 조절펀드에서 지원되던 유동자금 보장제도는 1985~95년 중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금 수요를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대부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리원경은 기업소 유동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금수요는 은행 대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동재산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자금수요는 국가 재정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5)</sup>

54)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55) 리원경, “나라의 화폐자원 관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

나. 기본건설자금 지원대상 축소

북한은 1964년 기본건설자금은행이 담당하던 기본건설자금을 폐지하고 유동자금과 기본건설자금 등 모든 국가자금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면서 기업소의 기본건설자금 조달방식도 자체보장에서 국가예산에 의한 보장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85~95년중 일부 수정되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재산 건설 중에서 국가기본건설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자체자금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서는 투자액이 5만원, 건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단위당 가격이 300원 미만인 보충완비설비 등이 자체자금건설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6)</sup>

다. 기업소 이윤의 내부유보 확대

북한은 유동자금 등의 자금보장 방식을 자체자금 및 은행 대부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확대하였다.

제도변화 이전에는 기업소이윤 중에서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기업소기금, 상급기금, 기업소 소속 예산제단위의 경비, 살림집유지비 등이 있었으나 제도변화 이후에는 자체유동자금, 자체기본건설자금, 자체과학기술발전비 등이 추가되어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sup>57)</sup>

2) 은행의 상대적 독자성 부여

북한에서는 자금보장제도의 변경과 함께 은행의 대부수요계획 작성에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56)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57) □□경제사전□□, 306면 및 □□재정금융사전□□, 886면.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홍영의에 따르면 재정계획화체계에서는 기업소의 상급기관이 작성한 재정계획 및 유동자금 보유기준계획에 기초하여 대부수요계획이 작성되었으나, 신용계획화체계에서는 은행이 기업소에 대한 대부수요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sup>58)</sup>

이는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대한 자금보장방식이 재정계획화체계에서 신용계획화체계로 변화되면서 은행의 대부계획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소 상급기관들이 대부를 많이 받기 위하여 하위 기업소의 재정규모를 부풀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계획 작성에 있어서 은행의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3. 계획경제체제 재정비 추진기(I-3기)

북한은 3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치면서 체제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19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를 내각중심의 중앙집권적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국가예산 수납체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1)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북한은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있던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김정일이 직접 발기한 북한 최초의 사회주의 계획법으로서 계획의 작성 및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계획부문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제3차 경제개발 7개년계획(1987~93)이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예산·결산심

58) 홍영의, “대부수요계획 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의를 위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에서 예산 및 결산 안을 심의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은 김정일정권이 김일성사망 이후의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계획경제 체제를 다시 회복해 보겠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 2) 예산수납체계 변경

북한은 1999년 예산수납체계를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부문별 수납체계’로 개편하였다. 지역별 수납체계는 국가예산자금을 지방 재정기관을 통해 수납하는 방식이며 부문별 수납체계는 내각의 각 성 및 관리국이 자기 소속 기업소들로부터 예산자금을 직접 거두어들이는 방식이다.

기존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는 내각의 성 및 관리국이 소속 기업소의 예산 납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이들 기업소들의 예산납부의무 이행여부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문별 수납체계에서는 예산납부가 기업소→관리국→성(생산 부문별)→재정성의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성 및 관리국이 예산납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부문별 예산수납체계는 예산납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김일성사망 이후 흐트러진 예산수납체계를 바로잡고 나아가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북한의 박성호도 부문별 수납체계가 중앙예산소속 기관·기업소의 예산수납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예산수납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9)</sup>

59) 박성호, “새로운 국가예산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한편 북한의 오선희는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부문별 수납체계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 체계는 전국적인

### 3) 예산 지출항목 조정

북한은 2001년 ‘사회·문화 시책비’ 명칭을 ‘인민적 시책비’로 변경하였으며 인민경제사업비(인민경제비의 일부) 항목이었던 ‘추가적 시책비’를 ‘인민적 시책비’에 포함시키는 항목조정을 실시하였다.

명칭변경 및 구성항목조정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인민적 시책비가 늘어나도록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4. 경제관리 개선시기(Ⅱ기)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가격 및 임금 인상, 가격설정방식 개편, 국가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위임, 공장·기업소에 경영자율성 부여, 원부자재 시장 개설, 분배의 차등화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재정관련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재정관련 제도의 법제화는 2002년 5월의 「재정법」 개정, 2003년 3월의 「회계법」 제정, 2004년 4월의 「재정법」 재개정, 2005년 7월의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재정제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컴퓨터망이 세워진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별수납체계는 예산수입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권기관이 현지에서 그 지방의 생산기업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앞의 논문. 이와 같은 주장은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의 하나인 지방예산 편성방식 변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기된 것으로서 예산수납체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변화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1) 경제관리 개선 원칙

재정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제정제도를 포함한 제반 경제관련 개선조치를 단행한 원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경제관리 개선조치 내용은 <표7> 참조).

< 표 7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내용

구 분	조치전	조치후	비 고
가 격	· 국정가격<<농민시장가격	· 국정가격=농민시장가격	· 가격단일화 및 시장 가격 안정 추구
수매가격	· 수매가격<<국정가격	· 수매가격<=국정가격	· 가격편차금보상제도 폐지1)
노동자 월 평균 임금	· 100~150원	· 2,000원 내외	· 가격인상에 따른 생활비 보전
가격설정시 고려사항	· 생산원가	· 생산원가, 국제시장 가격, 국내 수요·공급	· 가격설정 기준 변경
가격 설정 기관	· 중앙 및 지방정권기관	· 중앙 및 지방정권기관 이외에 지방공장에 대해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 가격설정 권한 분산
계획수립 권한	·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	·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국가적 주요 지표계획만 작성하고 여타 세부계획은 해당 기관·기업소·지방정권 기관이 수립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
공장·기업소 경영	· 원자재 등을 국가에 의존 · 원가개념보다 국가계획 목표달성이 우선 ·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생산	· 원부자재를 자체 해결 · 원가개념을 강화 및 실리 파악을 위한 계산체계 수립 · 생산전문화 유도	· 독립채산제 강화 · 물량계획보다 수익성 강조
원부자재 시장	· 원부자재에 대한 시장거래를 불허	·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 · 일정 생산물의 시장 납품 허용	· 교역물자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가 규정 · 대금은 은행결제
분배방식	· ‘평균적 분배주의’ 팽배 ·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유명무실	· 번 수입 기준으로 분배 · 수익성이 좋은 공장·기업소의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 지급	· 분배의 차등화
사회보장 체계	·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국정가격을 적용하여 거의 무상으로 공급	·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조치 · 다만, 무상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 등은 유지	· 배급제도의 사실상 폐지 · 재정지출 규모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로의 전환 기반 조성

주 1) 실제가격과 판매가의 차이를 국가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

자료 :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원칙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0)</sup>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고수하면서 당과 사회주의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개혁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큰 틀 안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개선 원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실리보장의 원칙이다. 실리보장원칙 하에 경제관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2001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월 1일자 3개 신문<sup>61)</sup> 공동사설에서 “경제조직 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이전부터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리보장원칙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으로 사회주의 분배원칙<sup>62)</sup>의 정확한 실시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하부 조직의 창발성을 옹기 결합시키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두 원칙은 그동안에도 자주 거론되던 원칙들로서 새로운 원칙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원칙들의

---

60) 이 원칙은 북한의 『노동신문』 2001년 10월 22일자에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의 발언을 묶어서 소개한 기사와 북한의 『민주조선』 2001년 11월 22일자 논설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해 나가는 데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 등에 잘 나타나 있다.

61) 당보인 『노동신문』, 군보인 『조선인민군』, 청년보인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을 말한다.

62)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수가 차레지도록(지급되도록) 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용에 수정을 가하였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정확한 실시<sup>63)</sup>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분배를 노동에 의한 분배(사회주의적 분배)와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공산주의적 분배)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에 의한 분배, 즉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임금)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 즉 공산주의 분배원칙은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교육, 의료, 사회보험 및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그동안에도 근로자의 생활비(임금) 지급에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리 개선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내용이 변하였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한다는 표현의 전통적 의미는 평균주의를 없애기 위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이를 두고 분배하되 지나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관리 개선 이후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평균주의를 없애기 위해 분배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지나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위해 생산계획의 수행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sup>64)</sup> 그러나 지금은 ‘변 수입’ 계획 수행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 수입이란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 즉 ‘총판매수입-원가(임금 제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분

63)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한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받는다’는 원칙을 관철시킨다거나 평균주의를 없앤다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4) 노동의 양은 생산량, 노동의 질은 원가절감정도로 평가하였다.

배의 기준이 생산에서 판매로 변화한 것이다.

이제 북한은 근로자와 기업소에 대해 번 수입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번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번 수입에 의한 분배란 근로자의 생활비(임금), 기업소의 이득금, 국가에 대한 분배인 국가기업이득금을 모두 번 수입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비(임금)몫<sup>65)</sup>의 경우 기존에는 생산계획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변화된 방식에서는 번 수입 계획 실행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생산계획만 달성하면 이익을 본 기업소나 손실을 본 기업소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이익을 본 기업소의 근로자가 손실을 본 기업소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은 생활비를 받게 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생산계획을 100% 수행한 경우에도 판매가 안 되어 번 수입이 없을 경우 생활비(임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sup>66)</sup>

번 수입에 의한 평가는 물질적 평가, 즉 분배를 더 해주고 덜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리기반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에 대하여 물질적 평가뿐 아니라 정치적 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7)</sup> 또한 과거에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물질적 자극의 수단으로만 보고 정치사상교양에 의한 정치·도덕적 자극과 구분하여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배형태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하여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근로자들의

---

65)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의 실행정도에 따라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내 줄 수 있는 생활비자금의 최고 한계를 의미한다.

66) 물론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생산한 물건이 판매되지 않아 번 수입이 없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67) 리기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완성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하부조직의 창발성<sup>68)</sup>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

이 원칙은 국가가 경제생활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초 위에 하부조직이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도 경제관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sup>69)</sup> 독립채산제 기업 및 지방정권 기관의 상대적 독자성도 이 원칙에 근거하여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0)</sup> 그동안에는 하부조직의 창발성보다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더 중요시되었으나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는 하부조직의 창발성이 더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는 기업의 창발성 발휘를 위해 기업의 경영상 독자성 강화, 지방공장에 대한 가격설정 재량권 부여, 원부자재시장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제관리기관들의 창발성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권한을 하부위임하고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개인의 창발성 발휘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개인들에 대한 생활비 분배나 정치적 평가를 번 수입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배급제를 사실상 폐지하여 가계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주어진 계획에

68) 창발성은 창조성과 자발성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북한 용어이다.

69)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32조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옹계 결합시켜 할 대상으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제시하고 있다.

70) 국가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이 가지는 경영상 독자성은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독자성, 다시 말하면 상대적 독자성이다. 서영식, “사회주의로동보수체에서 국가와 개인의 리익에 대한 기업소리익작용의 정확한 실현”,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2001, 23면.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2) 재정관련 제도개선 내용

이와 같은 경제관리 개선 원칙에 따라 재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정관련 개선조치는 2001년 말에 만들어져<sup>71)</sup>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8>과 같다.

< 표 8 > 경제관리 개선조치(개선원칙 기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위한 조치	하부조직의 창발성을 위한 조치
재정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 수입에 의한 국가기업이득금 납부</li> <li>- 거래수입금을 폐지하여 분배 및 평가시 번 수입 기준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금 폐지 및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기업의 경영 독자성 부여</li> <li>- 지방예산 편성방식 변화를 통한 지방 재정기관의 독자성 부여</li> </ul>
기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장에 대한 가격설정 재량권 부여</li> <li>- 경제부문 계획수립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li> <li>- 원부자재 시장 개설</li> </ul>

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

2002년 3월 27일 북한 재정상은 재정보고에서 국가기업이득금이 2002년 총 예산수입의 77.6%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의 예산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없어지고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국가기업이득금에 대해 북한의 김영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

71)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내각의 홍성남 총리는 첫 번째 안건인 내각 사업계획과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에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업이익금을 통합한 새로운 예산수입항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72)</sup>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한 것은 기업소의 예산납부 계산기준을 기업소 이윤 및 도매가격에서 ‘변 수입’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 이외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거두어들이는 동시에 계획 외 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국가기업이득금 납부대상이 계획에 따른 경영활동뿐 아니라 계획외의 경영활동을 통한 판매수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부자재시장 개설,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허용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기업이득금 납부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획 외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한 것은 거래수입금을 폐지하였다는 의미이며 이는 예산수입항목 하나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가격구성요소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거래수입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인 동시에 도매가격의 구성요소이다. 북한제품의 도매가격은 ‘원가+거래수입금+이윤’으로 구성되었으나 거래수입금이 폐지됨에 따라 ‘원가+이윤’으로 가격 구성요소가 단순화되었다.<sup>73)</sup> 이에 따라 변 수입의 계산과 변 수입에 의한 분배 및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거래수입금을 폐지한 것은 기업소에 대한 평가를 수익성(변 수입)으로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거래수입금은 그동안 기업소의 이윤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거래수입금을 기업소마다 다르게

72)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동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4.

73) 가격 구성요소가 단순화됨에 따라 가격설정 방식 개편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었으며 지방 공장 등에 가격 설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적용하면 이윤도 달라진다. 북한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소에 대해서는 거래수입금을 낮게 책정하여 수익성을 높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소에 대해서는 거래수입금을 높게 책정하여 수익성을 줄여왔다.<sup>74)</sup>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래수입금을 없앴다는 것은 기업소의 수익성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소를 수익성 그 자체로 평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수익성이 좋지 못한 기업소를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감가상각금 관련 조정

북한은 2002년 제도개선 당시, 감가상각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 내부에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2002.3.27)에서 문일봉 재정상이 2002년 예산 및 2001년도 결산심의 보고에서 2002년 예산 규모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요구에 맞게 지금까지 국가예산수입으로 받아들이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남겨놓고 생산확대기금으로 쓰도록 하고서도 지난해에 비해 수입은 102.5%로 늘어나며 지출도 102.3%로 늘어나게 됩니다”라고 설명한 데에서 알 수 있다.

2001년까지 독립채산제 기업소는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가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국가예산에 납부하였다.<sup>75)</sup> 감가상각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 자금은 고정재산 보수비용(대보수자금)과 사용기간이 만료된 고정재산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단순 재생산 자금(기본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금(기본건설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76)</sup>

74) 오선희 “거래수입금의 제정 및 적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6~37면.

75) 협동적 소유의 기관·기업소는 감가상각금을 내부에 적립하고 고정자산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경우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 내부에 적립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가예산자금으로 지원되던 대보수비용과 고정재산의 단순재생산 비용은 내부에 적립한 감가상각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립광남은 기존 방식도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와 장점이 있지만 개별 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고정자산의 보수와 재생산을 제때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6)</sup>

결국 예산수입항목인 감가상각금과 예산지출항목인 대보수자금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기본건설자금도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입원 확보 등을 이유로 하여 2005년부터 국가예산수입 항목에 감가상각금을 다시 편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편입이후에도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 납부를 제외하고 있어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조정재산을 자체자금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지속되고 있다.

#### 다. 예산수입 확대를 위한 항목 조정

##### ① 토지사용료 신설 및 부동산 사용료로의 확대

2002년에는 토지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를 부동산 사용료로 확대 개편하였다.

토지사용료가 예산수입항목 중 하나가 된 것은 2003년 3월 26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의 예산·결산 보고에서 북한의 예

76) 감가상각금 수입이 많지 않을 때에는 고정재산의 단순 및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을 다른 명목(예를 들어 거래수입금 또는 국가기업이익금)으로 납부된 예산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었다.

77) 립광남, “고정재산재생산의 자금원천보장에서 나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산수입 중 토지사용료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다는 발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발표한 4개의 예산수입항목(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사회보험료 수입, 토지사용료 수입)중 하나로 토지사용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내각결정 제53호(2002.7.31) 21조에는 “경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 군부대, 개인의 토지가 징수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농장과 학교, 간부 양성기관의 실습농장,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집주변의 터, 개인이 경작하는 밭 등 12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사용료는 예산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부동산사용료로 확대, 개편되었다. 부동산 사용료는 국가소유인 도로(다리), 강하천, 호수, 산림, 지하자원 등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것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sup>78)</sup>

## ② 사회보험료 확대

북한은 예산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사회보험료를 2006년부터는 기업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예산 수입계획을 세우면서 사회보험료 수입을 2005년 대비 141%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과방법 등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

78) 동아일보(2006.4.13)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부동산을 내·외국인에게 임대하거나 개발 및 장기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개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 ③ 기타 조치

북한은 새로 조성된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개인 및 기업소, 협동단체로부터 시장사용료와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장사용료는 시장에서 판매 매대를 갖고 장사하는 경우 징수하는 일종의 임대료이며 국가납부금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 등에게 판매이익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소득세이다.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은 2003년 농민시장이 공산품까지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개편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부터 농민시장에서 징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3년을 계기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결정 제27호(2003.5.5)는 점포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달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9)</sup>

종합시장에서 징수하는 국가납부금은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 판매이익을 미리 추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생선, 식용유, 쌀은 40원, 공업품은 60원 등 상품 종류별 일정액에 수량을 감안한 금액이 국가납부금이 된다.<sup>80)</sup>

## 라. 지방예산 편성방식 변경

북한은 지방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국가가 지방예산 수입과 지출의 총규모뿐 아니라 지방예산 소속 개별 기업소의 세부

79) 통일거리시장 등 일부 시장은 시장관리를 행정기관 산하의 관리소에서 국영기업소로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의 시장사용료는 국영기업소에 내는 요금이다.

80) 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평양발로 자세한 취재기사(2004.9.7)에 따르면 “각 매대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산출하는 것도 이들의 일감이다. 거래되는 상품별로 평균치를 내는데 식료품에 비하면 전자제품 등 고액상품을 취급하는 단위들이 액수가 더 높다. 작년 8월에 정해진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은 올해 1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계획지표까지 계획화하였으며 이 계획에 법적 강제성까지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2년 시행된 새로운 지방예산 편성제도 하에서는 도별 공업총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만 중앙정부가 정해주고 세부지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세운 세부계획은 법적 강제성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보다 쉬워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도변경 전까지 지방정부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상급기관에 납부하였으나<sup>81)</sup> 지금은 각 지방의 수입·지출 결과에 관계없이 중앙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이 먼저 정해진다. 또 여기에 법적 강제성까지 부여된다. 결국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예산 수입 및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중앙예산에서 지출하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비용을 지방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 북한의 오선희는 업무의 복잡성 등을 동 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sup>82)</sup>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수입·지출결과에 관계없이 중앙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따라서 돈이 부족할 경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81) 군은 도 종합예산에, 그리고 도 종합예산은 중앙예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82) 동 조치의 이유에 대해 사회보장 사업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중앙예산에서 시, 군에까지 동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업무가 복잡하며 지방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예산에서 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앞의 논문.

##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 제 1 절 북한의 재정법과 국가예산수입법

#### 1. 재정법의 주요 내용

##### 1) 재정법의 의의

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재정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통일적 분배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재정은 분배적 기능, 통제적 기능, 그리고 계획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sup>83)</sup>

재정의 분배적 기능에 관하여 재정법 제2조에서는 “화폐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노동에 의한 분배를 옹기 실현하도록 화폐자금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통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4)</sup> 이외에 재정은 계획기능도 갖고 있다. 재정법 제 9조에서는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

83) 일반적으로는 북한 재정의 기능으로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주성환·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경영사, 2003, 74면 참조. 재정의 기능에 분배기능 및 통제기능 외에 계획기능을 추가하는 견해는 문성민, 앞의 논문, 10면 참조.

84) 재정법 제3조 내지 제7조 참조.

획이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예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2) 국가예산

### 가. 국가예산의 정의와 내용

재정법에서는 국가예산에 관하여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예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고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타산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5)</sup>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재정법 제10조).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재정법 제11조).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며,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 원천으로 하는데,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이 이에 속한다(재정법 제12조 및 제21조).

지방예산은 지방정권기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해당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재정법 제12조).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 원천으로 하며,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이 이에 속한다(재정법 제22조). 지방예산제는 군을 기본단위로 실시하는데,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재정적

---

85) 재정법 제9조.

특전을 준다고 규정(재정법 제23조)함으로써 지방예산의 독립채산을 촉구함과 아울러 국가재정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방예산제도는 7·1조치 이후 그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시행된 새로운 지방예산 편성제도 하에서는 도별 공업총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만 중앙정부가 정해주고 세부지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도변경 전까지 지방정부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상급기관에 납부하였으나<sup>86)</sup> 지금은 각 지방의 수입·지출 결과에 관계없이 중앙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이 먼저 정해진다.<sup>87)</sup> 결국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예산 수입 및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예산을 관리하는 지방회계계산은 지역적 범위에서 국가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자금의 변동을 회계계시(계시는 계정을 의미함)에서 복식기입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복식기입방법에 의하는 것은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자금계산자료의 정확성을 거래 건별, 일별, 순별, 월별, 결산기별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재정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실현하고 있다.<sup>88)</sup>

중전 북한의 계시체계에는 국가자금의 중요구성부분인 국가예산자금의 운동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지방회계계시가 없었다. 따라서 지역적 범위에 서의 국가예산수입과 지방예산지출에 대한 계산자료는 해당 회계결산기말에 가서야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회계결산서자료와 재정기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한 지방회계는 계시에 의해 각이하게 일어나는 국가

86) 군은 도 종합예산에, 그리고 도 종합예산은 중앙예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87)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앞의 논문, 42면 참조.

88) 함성준, “지방회계계산의 특징과 역할”,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7, 38~40면 참조.

자금의 운동을 경제적 내용별로 갈라 체계화할 수 있게 한다.<sup>89)</sup>

즉, 지방회계계시는 국가기업이득금계시, 협동단체이득금계시, 토지 사용료수입계시,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인민생활공채수입계시, 기타 수입계시, 지방유지금계시로 구체화되어 있으면서 지역적 범위에서의 예산수입정형을 항목별, 예산소속별로 갈라 계산반영하여 줄 뿐만아니라 예산자금지출을 기본건설자금계시, 대보수자금계시, 인민경제사업계시, 사회문화사업비계시, 국가관리비계시, 유동자금공급계시, 지방예산우대기금계시를 통하여 그 용도별로 계산소속별로 경상계산할 수 있게 한다.<sup>90)</sup>

이러한 지방예산과 지방회계계산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정치하게 함으로써 재정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국가예산수입과 지출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재정기관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따라 국가예산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재정법 제13조).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재정법 제14조). 국가예산수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예산수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국가예산지출

국가예산자금은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데, 재정기관은 기간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출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재정법 제15조). 또한 국가예산

---

89) 함성준, 앞의 논문, 39면.

90) 함성준, 앞의 논문, 39면.

자금은 사회문화시책을 위한 지출(제16조),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 등으로 지출된다.

사회문화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국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sup>91)</sup> 항목별, 용도별로 지출하는데, 해당기관은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무를 과학화, 간소화하여 국가관리비를 줄이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예비비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 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 3)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사회주의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도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재정법 제24조). 따라서 재정법에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제3장(제24조 내지 제39조)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재정법 제25조).<sup>92)</sup>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재정법 제36조). 그

91)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31면.

92) 재정법 제30조에서는 이에 관해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리고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은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재정법 제37조).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하며,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재정법 제38조).

그리고 재정법 제39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하며,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 수 없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수입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4) 재정총화

재정총화는 “국가 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 일정한 기간의 재정 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sup>93)</sup>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소정의 기간단위로 재정의 운용결과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데,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재정법 제41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연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재정법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하는데,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

93) 또한 재정총화는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돈을 번 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인데 국가에 이익을 준 것은 얼마이고, 손실을 준 것은 얼마라는 것을 분석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정예산집행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96면 참조.

금기금, 국가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재정법 제45조)고 규정하여 재정총화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재정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재정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재정법 제47조)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 5)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은 재정사업에서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국가재정금융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재정법 제48조). 그리고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재정법 제49조).

“기관, 기업소 경영활동정형과 재정관리실태를 검토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재정통제의 한 형태”<sup>94)</sup>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감사제도<sup>95)</sup>에 해당하는 재정검열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도록 규정(재정법 제52조)하고 있다. 이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 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재정법 제53조).

94)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74면 참조.

95) 상급기관 및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국가예산수입법의 주요 내용

### 1) 국가예산수입법의 의의

국가예산수입법(2005. 7.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정의되며, 국가예산수입 항목에는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감가상각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이 속한다(국가예산수입금 제2조). 그리고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예산수입은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 지방예산수입은 지방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구성된다(국가예산수입법 제3조).

국가예산수입법 제1조에서 “국가예산수입법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의 납부,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마련에 이바지한다”고 그 사명을 밝히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과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도록 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내용에는 국가기업이득금<sup>96)</sup>과 협동단체이득금의 계산과 납부비율, 감가상각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의 계산과 납부, 그리고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등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와 관련 있는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예산수입법 제10조(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에서는 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

96) 자본주의경제에서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일종의 법인소득세로 볼 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sup>97)</sup>

## 2) 국가예산수입의 원칙

북한은 국가예산수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4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첫 공정으로서,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5조).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며, 국가는 생산을 늘이고 절약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무단히 늘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의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6조).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예산납부 이외의 부담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7조).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를 바로 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문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97) 우리나라 현행 국가재정법 제101조에서는 재정 관련 공무원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자격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제1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이외에 제1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섯째, 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8조). 국가 예산납부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9조).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국가예산수입사업은 재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 3)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을 바로 하는 것은 국가예산납부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따라서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소득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 번호 같은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경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sup>98)</sup>

국가예산수입법 제17조(전표의 경유)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을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은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유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각종 증서들의 사용으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제18조에서 소득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하여, 제19조에서는 국

98) 국가예산수입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참조.

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여 국가예산수입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4) 국가예산수입의 항목과 납부

국가예산수입법에서는 국가예산수입의 항목을 크게 구분하여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 감가상각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sup>99)</sup>

< 표 9 > 국가예산수입의 항목 구분

항 목	정의	납부대상
국가기업이 득금과 협동단체이 득금	- 기관, 기업소, 단체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이득금 또는 협동단체이득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
감가상각금	-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	-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 고정재산
토지사용료	-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생산물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	- 알곡, 납새, 청애사료, 과일나무, 뽕나무, 기름나무, 궁예 및 유지작물, 약초, 박하, 참대, 갈 같은 것을 심어 이용하게 된 토지
사회보험료	-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능력상실자와 연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	- 해당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노동보수자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 입금	-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	-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이득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 것이 속함
기타수입금	-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	-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노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 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 것이 속함

99) 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등을 국가예산수입항목으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본주의사회의 재정에서는 감가상각금은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또는 적립금, 준비금 등)으로 자체 적립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금이거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가.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sup>100)</sup> 기업소들이 순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기업소자금이 국가자금적 성격, 상대적 독자성, 생산적 성격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국가자금적 성격으로부터 기업소자금이 국가자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sup>101)</sup>

국가기업이득금은 종래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통합한 것으로 그 포괄범위가 넓어졌으며, 번 수입의 분배체계에 따라 계산되고 납부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는데, 종래에 순소득을 직접 원천으로 하여 국가예산에 동원되던 거래수입금이나 국가기업이익금과 구별된다.<sup>102)</sup>

국가기업이득금의 부과단위는 독립채산제국영기업소들이다. 여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업, 유통, 봉사부문을 비롯한 비생산 기관, 기업소들도 포함된다. 그것은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소들만 부과단위로 규정하면 수입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전사회적 범위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수입이 조성되는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통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03)</sup>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이득금 또는 협동단체이득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의 계산은 총판매수입금<sup>104)</sup>에서 원료 및 자

100) 북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명목상 조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이 자본주의사회의 조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01) 오선희, “사회주의기업소자금의 성격”,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34~36면 참조.

102)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동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4, 24면.

103) 김영수, 앞의 논문, 25면.

104) 수입금의 계산은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같은 수입이 포함된다. 『국가예산수입법』 제22조.

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요금 및 수송비, 일반비 같은 것을 빼고 확정된 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sup>105)</sup> 적용하는 납부 비율은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에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소득에 대한 납부비율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납부비율을 적용한다.<sup>106)</sup>

시(구역),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유지금을 정한 기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해당 재정기관은 지방유지금을 국가기업이득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국가예산수입법 제26조).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일정한 기간 줄여줄 수 있다고 규정(국가예산수입법 제27조)한 것이다. 이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투자를 한 경우 특혜를 주어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나. 감가상각금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다.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 고정재산

105) 기업소들에서 기업소생산확대기금에서 지출하여 구입하는 단독설비비, 조립하지 않는 설비비, 고정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금, 비품구입비, 계획규율, 재정규율을 어기면서 조성된 수입금, 보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 등은 국가기업이득금이 붙는 수입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김영수, 앞의 논문, 25면.

106) 국가예산수입법 제20조 내지 제23조 참조.

### 3. 이밖에 감가상각금을 바치지 않기로 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의 계산은 형태별고정재산의 시초가격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정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시초가격보상몫과 대보수비보상몫으로 나누어지는데, 적립규모는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을 내용연한기간 한 해에 회수할 자금이 따라 정한다.<sup>107)</sup>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택하는 공기업 등의 경우 감가상각금을 충당금(또는 적립금, 준비금 등)으로 자체 적립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감가상각금을 국가예산수입으로 직접 편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sup>108)</sup>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제20조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유통비에 넣어 따로 적립한 다음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체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다.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생산물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sup>109)</sup> 토지사용료

---

107) 국가예산수입법 제29조 내지 32조 참조.

108) 북한은 7.1 조치 이후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 때 감가상각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에 남겨두어 생산확대기금과 같은 자체기금으로 쓰도록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보고 때부터 국가예산수입 항목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제정된 국가예산수입법에도 수입항목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7.1 조치 이후 폐지했던 감가상각금을 국가가 예산 항목에 다시 편성한 것은 기업소간의 생산설비 노후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9) ‘토지사용료’ 수입은 7.1 조치 이후 신설된 항목으로 경작물을 생산하던 모든 기관, 기업소, 군부대, 협동농장의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하였다.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보고부터 ‘부동산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는 앞으로

의 납부는 알곡, 남새, 청애사료, 과일나무, 뽕나무, 기름나무, 공예 및 유지작물, 약초, 박하, 참대, 갈 같은 것을 심어 이용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한다.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농업부문의 대학, 전문학교에서 육종에 이용하는 토지
2. 새로 개간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3.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
4. 이밖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토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1부류, 2부류로 나눈다.

- 1부류: 협동농장, 농목장의 토지, 탄광에 소속된 후방경리용 토지와 시(구역), 군이 원료기지로 리용하는 토지
- 2부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토지, 실습토지, 원료지와 외화 벌이기지로 이용하는 토지

토지사용료의 계산은 부류별, 지목별, 등급별에 따라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사용료를 12월 10일까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액은 다음해 1월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sup>110)</sup>

#### 라.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능력상실자와 연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와 협동단체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

재정수입 확대와 ‘공짜’ 없애기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실사 사업을 짜고 들어 부동산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용료를 제정·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110) 국가예산수입법 제34조 내지 제38조 참조.

기관, 기업소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자금으로 한다.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계산은 월노동보수액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은 월노동보수액의 1%로 한다.<sup>111)</sup>

협동단체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해당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으로 한다.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에서 바칠 사회보험료 계산은 월노동보수액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협동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은 월노동보수액의 7%로 한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사회보험자와 사회보장자가 받는 연금 및 보조금
2. 비재적근로자에게 주는 노동보수자금
3. 이밖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수입금

사회보험료에 관하여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 간에 가장 큰 차이는 납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 기관에서 노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2)</sup>

#### 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

111) 200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를 원만히 실행하고 국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기업소 부담 사회보험료 납부 제도를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노동자들이 달마다 받은 생활비의 1%를 지출하여 사회보험비를 충당하였다. 바뀐 제도로 인해, 각 기업소는 기업소 이득금의 7%를 기업소 부담 몫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사이트 [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ebriefing/ebaws03.jsp&userid=guest&id=20070416133118092&field\\_cd=](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ebriefing/ebaws03.jsp&userid=guest&id=20070416133118092&field_cd=) 참조.

112) 국가예산수입법 제39조 내지 제43조 참조. 이 제4절 사회보험료에 관한 규정들에서는 ‘협동단체’(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와 ‘협동농장’(제43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또한 제43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동농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이익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 것이 속한다. 합영, 합작기업의 북한측 당사자가 받은 이익배당금도 이에 속한다.<sup>113)</sup>

-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포장용기, 설비, 비품 같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자금으로 적립할수 있다.
- 가격편차수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가격변동조치로 가격편차수입금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완제품 또는 상품의 가격편차수입금은 판매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체로 납부하며 류동재산의 가격편차수입금은 가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조치로 생긴 손실은 국가예산에서 보상하여줄 수 있다.
- 무역편차이익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활동과정에 조성된 무역편차이익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역편차이익금의 계산은 수출입상품호상간 편차손익을 상쇄하여 한다.
- 차관, 연불수입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관 또는 연불로 들여온 물자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금을 더한 판매수입금을 3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관으로 외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에 넣고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을 받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익배당금: 합영, 합작기업의 북한측 당사자는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화로 받은 이익배당금은

113) 국가예산수입법 제44조 내지 제49조 참조.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의 25%를, 물자로 받은 이익배당금은 상품판매수입금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수입금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노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 것이 속한다. 그리고 공민이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조성한 개인수입금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14)</sup>

- 무상노력동원수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노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노동보수몫을 정한 기일 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수수료, 관세: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 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벌금 및 몰수품수입금: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 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재산보험료: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연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 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

114) 국가예산수입법 제50조 내지 제57조 참조.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북한 영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른다.
- 개인수입금: 공민은 시장 같은 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수입금 중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sup>115)</sup> 보험기관의 재산보험료 잉여자금 등의 국가예산수입 편입은 사회주의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은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 고 규정한 재정법 제37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에 외국인투자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인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공민의 개인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부업경리활동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의적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수입금 일부를 징수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세부규칙을 두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 5)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장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자금이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예산납부의 결산은 연초부터 누계적으로 하며, 분기별, 연간으로 한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

115) 북한 민법 제263조에서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정계산서를 달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결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 안으로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장부와 은행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납부전표 같은 국가예산납부문건을 5년간 보관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분기표, 연간회계결산서 같은 것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sup>116)</sup>

#### 6)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 국가예산수입법 제5장(제63조 내지 제72조)에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라고 전제하면서,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하도록 하면서,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 같은 것을 이용하여 국가예산납부정형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sup>117)</sup> 이처럼 북한의 법령 조문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 ‘현대적인 계량수단’ 등 변화와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국가예산수입사업이 중요하고, 또한 변화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현실 적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16) 국가예산수입법 제58조 내지 제62조 참조.

117) 국가예산수입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8조 참조.

국가예산수입법 제69조 내지 제72조에서는 국가예산수입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연체료 적용, 판매수입금의 회수와 영업정지, 벌금 적용,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까지 단계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3. 남북한 재정법제의 비교

북한의 「재정법」과 남한의 「국가재정법」(2006. 10. 4. 제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재정법」과 남한의 「국가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및 결산의 승인(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몇 가지 사항에서는 규정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그 제정 목적에서 남한은 성과지향성과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화폐자금 마련의 계획성과 통일적인 분배·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회계연도는 남북한이 공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나, 남한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북한의 경우에는 법상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셋째, 남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면 북한은 국가예산을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하여 국가종합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sup>118)</sup> 북한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특별히 지정한 사업대상, 특별히 지정한 자금원천에 의하여 운영한다는 명목 밑에 일반회계(일반예산)와 분리시켜 설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예산. 특별예산, 특별기금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반인민

118) 남한의 국가재정법은 지방예산과 공기업 등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두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적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예산의 정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보려는 것, 부르조아국회의 예산승인 대상에서 제거하거나 손쉽게 형식상으로 종합숫자만 통과시키려는 것, 위기에 처한 국가예산의 정체를 가리려는 것 등을 들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sup>119)</sup>

넷째, 남한은 국채 및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북한은 국채 및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에서 국공채의 발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내각공보<sup>120)</sup>에 의하면 내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 데 대한 법령에 따라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하는 법령의 형태로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21)</sup> 인민생활공채는 국가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 사실상의 국채라고 할 수 있지만,<sup>122)</sup> 그 수입이 지방회계계정의 하나로 산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채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3)</sup>

다섯째, 남한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119)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171~1172면 참조.

120) 『내각공보』(2003. 3. 27)

121) 북한은 지난 1950년 2월 말~3월 초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의 결정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15억원(북한돈) 규모의 ‘인민경제발전채권’을 발행하는 등 1950년대에 국가건설과 전시자금 동원을 목적으로 국공채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2003. 3. 30) 참조.

122) 북한에서 ‘공채’는 “국가 또는 지방기관이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발행하는 빚 문서. 국가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공채를 국채라고 하며 지방기관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공채는 지방채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일시 부족되는 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국가의 수입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국영경리의 내부축적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5면 및 208면.

123) 함성준, 앞의 논문, 39면.

여섯째, 남한은 감사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회계결산서에 대한 상급기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곱째, 남한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남한의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계속비,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재정법』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표 10 > 남북한 재정법의 비교

항 목	남한 국가재정법	북한 재정법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회계연도	제 2 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1조 후단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 3 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회계구분	제 4 조 (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구분	-	제 11조 전단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기금의 설치	제 5 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항 목	남한 국가재정법	북한 재정법
재정정보의 공표	제 9 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예산총계주의	제17조 (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국채 및 차입금 규정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예비비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용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 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적립한다. 예비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계속비	제23조 (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국고채무 부담행위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산안 국회제출 및 승인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항 목	남한 국가재정법	북한 재정법
결산검사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년간 재정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정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결산의 국회 승인	제61조 (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국민감시	제10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 2 절 북한의 재정법제와 외국인투자

북한은 내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는 달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법에 의거하여 기타수입금 항목으로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

### 1.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일반규정

북한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세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법규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투

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북한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지만 북한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조선동포에게도 적용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상의 외국투자기업에는 북한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북한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sup>124)</sup>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국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sup>125)</sup>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의 항목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sup>126)</sup> 그 상세한 내용은 <표11>과 같다.

북한의 김두선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소득과세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부과함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직접세의 한 형태로 세금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등을 통해 세부담이 비교적 공평하다는 점, 납세인들의 경영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확정, 비용지출인정기준과 공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징수방법이 다양하여 세계산이 비교적 복잡하고 그 관리가 힘들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27)</sup>

---

12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조 참조.

12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7조 참조.

126)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의 경우에도 세금 항목은 동일하다.

127) 김두선, “소득과세와 그 특징”,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7, 35~40면 참조.

&lt; 표 11 &gt;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상의 세금 항목

세 금	내 용	계 산
기업 소득세	<p>제 8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대리점같은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p>	<p>제 9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p> <p>제 10 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제 11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개인 소득세	<p>제 17 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p> <p>제 18 조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li> <li>2. 리자 소득</li> <li>3. 배당 소득</li> <li>4.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li> <li>5.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li> <li>6. 증여소득</li> </ol>	<p>제 19 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7만 5천원 아래일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 세율은 소득액의 5~30%로 한다.</li> <li>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의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li> <li>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75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 세율은 소득액의 2~15%로 한다.</li> <li>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25%로 한다.</li> </ol> <p>제 20 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제 21 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제 22 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제 23 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세 금	내 용	계 산
재산세	<p>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p> <p>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한 때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li> <li>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li> <li>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li> <li>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li> </ol>	<p>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p> <p>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p> <p>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상속세	<p>제31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p>	<p>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p> <p>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p> <p>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금액의 30%로 한다.</p> <p>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거래세	<p>제37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p> <p>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으로 한다.</p>	<p>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생산물판매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율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p> <p>제40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p>
영업세	<p>제43조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도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p> <p>제44조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수입금으로 한다.</p>	<p>제45조 영업세의 세율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p> <p>제46조 영업세는 업종별 수입금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p>
지방세	<p>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p> <p>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갈</p>	<p>제52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로임 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li> <li>2.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li> </ol>

세 금	내 용	계 산
지방세	<p>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p> <p>제51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p> <p>제5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p> <p>제5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p> <p>제55조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1,500~1만 5,000원으로 한다.</p>

## 2. 경제특구와 관련한 재정규정

북한은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재정에 편입되는 세금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2003. 9. 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이며,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sup>128)</sup>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 세무소가 하고, 공업지구 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sup>129)</sup> 세금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sup>130)</sup>

개성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US\$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규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sup>131)</sup> 부과하는 세목으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같이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

128)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제2조.

129)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제3조.

130)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제16조.

13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조.

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을 두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결산이윤의 25%로 하고 있고,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14%로 정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소득세율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14%로 정하고 있다.<sup>132)</sup>

재산세의 세율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경우 등록된 재산가격의 1~1.4%로 정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0.1~1%로 상당히 낮게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이외에도 장례비용, 상속재산 보존관리비용, 공증료, 가족들의 부양료 등을 공제하도록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거래세의 세율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생산물 판매액의 1~15%이고 기호품의 경우 16~50%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일반물품의 경우 1~2%, 술과 담배 등 기호품의 경우 15%로 정하여 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영업세의 세율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해당 수입금의 2~10%로 규정하고 있으나,<sup>133)</sup>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대체로 1~7%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개성공업지구에서 공히 도시경영세와 자동차이용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도시경영세의 세율을 1%로 정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에서는 0.5%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132)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제19조.

133) 다만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영업세를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상업, 금양업, 오락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 48조.

은 전체적인 형식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율측면에서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보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상당히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2 >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 상의 세금 항목

세 금	내 용	계 산
기업 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물 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 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기재료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율)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이윤의 확정방법) 결산이윤은 기업의 총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이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 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이윤의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 수입액이 300만 미국달러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수입 봉사 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 세무소에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 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 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에 결산이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인 소득세	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노동보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 재산 판매소득, 지적 재산권과 기술기재료 제공	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율)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대한 세율은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 미국 달러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1에 따른다. 2. 증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이 1만 미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세 금	내 용	계 산
	<p>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 양성, 상담 같은 경영봉사 소득, 증여 소득이 속한다.</p> <p>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 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 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li> <li>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 소득.</li> <li>3.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등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li> </ol>	<p>국 달러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2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의 10%로 한다.</li> <li>4. 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li> <li>5. 재산판매 소득, 지적 재산권과 기술기재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li> </ol> <p>제37조 (개인 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동 도시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 노동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1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li> <li>2. 진료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의 이 규정 부록 2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li> <li>3.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li> <li>4. 배당소득,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li> <li>5. 재산 판매 소득. 지적 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li> </ol> <p>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 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 가격으로 계산한다.</p>
재산세	<p>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 (재산세의 납부 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1일 현재로 건물 소유자가 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당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 주소, 건물명, 단위, 수량, 건평, 내용연한, 건설연도, 취득 가격 같은 것을, 양도받은 건물은 양도자</p>	<p>제47조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3에 따른다.</p> <p>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p>

세 금	내 용	계 산
재산세	<p>의 이름, 주소 값을 것을 밝힌다.</p> <p>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 가격은 해당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현지가격으로 한다.</p> <p>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건을 내야 한다.</p> <p>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 등록증을 건물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 세무소에 보내야 한다.</p>	
상속세	<p>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 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금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p> <p>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할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li> <li>2. 상속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li> <li>3.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 하는 데 든 비용.</li> <li>4. 재산 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li> <li>5. 가족들의 부양료 30만 미국 달러.</li> </ol>	<p>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현재 가격으로 한다.</p> <p>제55조 (상속세의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액이 10만 미국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 4에 따른다.</p> <p>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후 남은 상속 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p>
거래세	<p>제60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61조 (거래세의 부과대상)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수익금에 부과한다.</p>	<p>제62조 (거래세의 세율) 거래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5에 따른다.</p> <p>제63조 (거래세의 계산방법) 거래세의 계산은 생산물 판매액의 이 규정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한다.</p>
영업세	<p>제66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67조 (영업세 부과대상) 영업세는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관광, 광고, 여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익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 인도 수익금에 부과한다.</p>	<p>제68조 (영업세의 세율) 영업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6에 따른다.</p> <p>제69조 (영업세의 계산방법) 영업세의 계산은 업종별 수익금의 이 규정 부록 6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여러 업종에 영업을 하는 기업의 영업세 계산은 업종별로 한다.</p>
지방세	<p>제72조 (지방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p>	<p>제74조 (도시경영세의 세율) 도시경영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7에 따른다.</p>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세 금	내 용	계 산
지방세	<p>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가 속한다.</p> <p>제73조 (도시경영세의 부과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노임 총액 또는 개인의 노동보수, 이자소득, 배상소득, 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 총액에 부과한다.</p> <p>제77조 (자동차 이용세의 납부의무) 자동차이용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블도젤, 냉동차 같은 것이 속한다.</p> <p>제78조 (자동차의 등록)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거주지 또는 체류지, 자동차 번호, 종류, 좌석수, 적재중량, 소유날짜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 세무서에 보내주어야 한다.</p>	<p>제75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방법) 도시경영세의 계산은 기업의 월노임 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 총액에 이 규정 부록 7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p> <p>제76조 (도시경영세의 납부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 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9조 (자동차 이용세의 세금액) 자동차 이용시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 8에 따른다.</p> <p>제80조 (자동차 이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 이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 대수에 이 규정 부록 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p>

### 제 3 절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 1. 재정법제와 회계법제의 관계

북한에서 재정법제와 회계법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재정은 국가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계획, 각 생산단위간의 자원배분, 개인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소득재분배,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한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재정계획기능과 재정통제기능이다.

먼저, 재정계획이란 정부가 세운 국가 및 기업의 경제활동 계획이 인민경제계획이며 이를 자금수급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 개념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재정법』에서도 제3장에서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북한의 재정에 국가 뿐 아니라 기업의 기능수행을 위한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이며 생산과 분배 등 제반 경제적 과정이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도 직접 수립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해야 한다.<sup>134)</sup>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기관·기업소별로 세운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을 의미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다.<sup>135)</sup>

다음으로 재정통제는 재정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는 사회주의국가가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제의 중요한 형태이다.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법적, 행정적 통제와 같은 다른 국가적 통제형태들과 구별되며, 재정적 공간의 이용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통제라는 의미에서 은행통제와도 구별된다.<sup>136)</sup>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영계산, 즉 회계는 재정통제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sup>137)</sup>

134) 문성민, 앞의 논문, 2면.

135) 『회계법』 제2조.

136)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98면 ‘재정통제’ 항목 참조.

137) 경영계산은 “기관, 기업소 경영활동과 그 실태 및 전망을 숫자적으로 타산하고 분석하는 사업”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기관, 기업소들에서 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과 부기계산, 원가계산을 비롯한 모든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42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산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원가계산, 경영통계계산, 계획계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66면 참조.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누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하고 있다(제3조). 또한 북한 회계법은 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제9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와 다름이 없으며,<sup>138)</sup> 이는 북한의 『재정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회계제도는 재정계획, 실행정형 및 재정통제를 뒷받침하는 기초이자 도구이다.

## 2. 인민경제계획상의 재정과 회계

지금까지 북한의 재정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정책의 경제조절기능 결여, 정부재정지출의 상대적 비중 과대 및 국영기업소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왔다.

이에 대한 재정개혁방안으로는 정부재정자원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 국영기업소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 투명성 있는 조세제도로의 개편,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한 정부지출제도의 변혁, 금융의 역할과 개혁 등이 제시되었다.<sup>139)</sup> 『회계법』의 제정 등을 포함한 일련의 회계관리제도 개혁은 회계법제를 체계화하고, 재정부문의 단위주체들의 회계관리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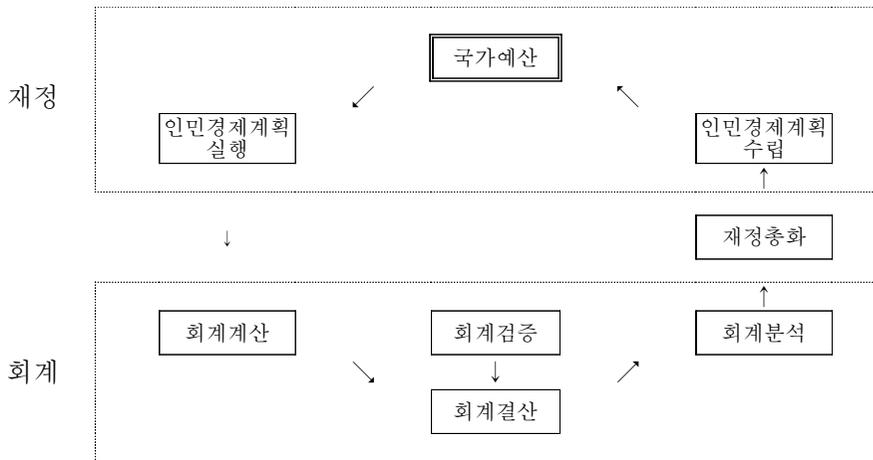
138) 북한 헌법에 따르면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단체 소유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파시킨다. 북한 헌법 제20~23조 참조.

139) 정민수, 앞의 논문, 183~184면 참조.

개선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는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법 상에도 회계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회계법 상의 규정들과 서로 맞물려 피드백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이 그림에서 재정에 속하는 과정은 『재정법』과 『인민경제계획법』에 의해, 회계에 속하는 과정은 『회계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게 된다.<sup>140)</sup>

<그림 2> 재정과 회계간의 순환과정



### 3. 재정법과 회계법의 조문 비교

여기서는 북한의 재정법과 회계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연계관계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140) 재정총화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재정총화는 곧, 재정과 회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계고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법의 제정목적상 회계는 재정관리의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북한의 재정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재정법 제14조)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므로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24조). 인민경제계획실행은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규제되고, 경영활동은 「회계법」을 통해 규제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회계법의 제정목적에서도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 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재정법 제26조).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재정법 제27조). 또한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하며,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재정법 제28조)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재정계획을 세워 이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계법 제11조에서도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회계계산을 하도록 하고, 경영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즉,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재정법 제25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정법 제30조).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기준에 상당하는 내용들 중 일부가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 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전제하면서,<sup>141)</sup> 유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쓰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동자금 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재정법 제31조), 원가와 순소득은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순소득을 늘여야 한다는 점(재정법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생산확대기금과 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재정법 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

141) 재정법 제29조.

정법에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42)</sup>

넷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으로 재정총화라는 과정을 두어 회계단위의 재정에 대한 성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재정총화를 바로하는 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재정법 제40조)고 규정하여 재정총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법』 제4장에 따르면 재정총화는 국가예산, 중앙예산, 지방예산, 기관·기업소·단체회계, 직장, 작업반 등 각 단위에서, 일, 순, 월, 분기, 반년, 연간 등 다양한 주기별로 행해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하며,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급기금, 국가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도록 하고 있다.<sup>143)</sup>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들이 행하는 분임토의, 경영검토회의, 그리고 주주총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는 재정법과 회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회계법 상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결산에 대한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회계법 제24조), 회계분석(회계법 제3장), 회계검증(회계법 제4장)뿐만

---

142) 이외에도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 있다.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재정계획에 맞물려 생산확대기금에서 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점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공사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 수 없다(재정법 제32조).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 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기술도입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기술도입금과 생산확대기금, 기업소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다(재정법 제33조).

143) 재정법 제41조~제47조 참조.

아니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 장악과 지도(회계법 제39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의한 감독(회계법 제40조),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감독통제(회계법 제4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법 상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각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총화(재정법 제4장)뿐만 아니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의한 통일적 지도(재정법 제49조), ‘해당 재정기관’에 의한 지도(재정법 제50조),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재정검열(재정법 제52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에 의한 재정통제(재정법 제5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같은 기관에 의한 같은 방식의 통제형태도 있겠으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가 제도적으로 너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그 만큼 회계에 대한 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대라는 목표가 절실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표 13 > 재정법 상 회계관련 조문과 회계법 비교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목 적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기본원칙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특정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2 조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의 책 무	제 7 조 국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 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국제협력	제 8 조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회계연도	제 11 조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5 조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재정총화	<p>제 6 조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재정총화</b></p> <p>제 40 조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p> <p>제 41 조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p> <p>제 42 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연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p> <p>제 43 조 일 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 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p> <p>제 44 조 순별 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 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p> <p>제 45 조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급기금, 국가에 리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p> <p>제 46 조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p>	제 29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 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무	<p>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 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p> <p>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운영	<p>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한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p> <p>제30조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p>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	<p>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수 없다.</p> <p>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p> <p>제28조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남부계획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p> <p>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p> <p>제31조 류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류동자금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p>	-
기관, 기업소,	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재	-

제 3 장 복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단체의 자금관리	<p>정계획에 맞물려 생산확대기금에서 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기본 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질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공사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들일수 없다.</p> <p>제33조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기술도입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기술도입금과 생산확대기금, 기업소 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수 있다.</p> <p>제34조 원가와 순소득은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순소득을 늘여야 한다.</p> <p>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 같은 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p> <p>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에서 국가납부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수 있다.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생산확대기금과 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p> <p>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p>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책임	<p>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p>	
회계문건의 작성과 보존	<p>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0조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8조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래 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p>

제 3 절 복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p>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수 없다.</p> <p>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p> <p>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p> <p>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p>
결 산	<p>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재정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정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p>	<p>제22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p> <p>제23조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li> <li>2.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li> <li>3. 부문회계결산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에 한다.</li> <li>4.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li> <li>5.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li> </ol> <p>제24조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지도통제	<p>제49조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p> <p>제50조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재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재정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통계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p>	<p>제39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p> <p>제40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5조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p>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항 목	재 정 법	회 계 법
재정검열	제52조 재정검열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
재정통제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 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 제5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법적 책임	제55조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6조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 4 절 북한의 재정과 금융법제

### 1. 재정과 금융

#### 1) 재정통제와 금융

북한에서 재정은행기관에 의한 통제는 재정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재정은행기관의 통제는 재정은행기관이 화폐적 공

간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적 통제에 한 형태이다. 은행은 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 결제를 진행하며 국가예산수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재정통제를 진행한다.<sup>144)</sup>

재정을 통제·감독하는 방법으로는 ‘재정총화’<sup>145)</sup>제도와 ‘원에 의한 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원에 의한 통제’는 은행이 각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은행이 국가의 재정적 통제기관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은행을 이용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은행을 이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화폐적 공간의 이용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sup>146)</sup> 이러한 은행에 의한 재정적 통제를 북한은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이처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은행의 근본적 임무이며, 경제 건설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로 인식된다.

사회주의은행은 경제관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바로 자본주의은행과 구분되는 점이다. 사회주의은행이 자금원천을 늘이고 기관, 기업소들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부를 주는 것은 그들의 계획수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 경제의 계획

144)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99면 및 1103면.

145)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에서부터 내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가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재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146) 김소영,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은행의 본신임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28면 참조.

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받아들이는 대부이자도 은행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경리운영에 대한 화폐적 통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sup>147)</sup>

그러나 북한에서 금융제도는 7·1조치 이후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금융시스템에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둘째는 재정과 금융의 융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재정과 금융의 융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국·공채의 발행과 재정투융자를 들 수 있는데, 북한은 예산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03년에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바 있고, 2006년에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공채와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재정자금의 확충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법제도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도 이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sup>148)</sup> 재정과 금융의 융합은 앞으로 북한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인민경제를 발전시킬 자금의 동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중앙은행에 의한 재정통제 기능과 상업은행에 의한 소비자금융 기능으로 분화되어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민경제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재정자금 동원과 내부예비인 유희화폐자금 동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990년대 이후

147) 김소영, 앞의 논문, 29면.

148)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리원경,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재정과 금융의 융합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7을 들 수 있다.

국내외정세의 급변에 따라 선군시대가 펼쳐지면서 인민경제계획이나 국가예산집행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인민경제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국가재정자금동원방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유희화폐자금동원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149)</sup> 이에 따라 유희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 2) 금융법제의 변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이하 중앙은행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하 상업은행법)을 각각 2004년 9월과 2006년 1월에 제정하였다. 이전까지 북한에는 중앙은행법이 없었으며, 다만, 1946년 10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가규율을 강화하여 북조선중앙은행을 창설할 데 대하여”와 그 부칙인 「중앙은행 규정」<sup>150)</sup>이 있었을 뿐이다.

그동안 북한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국가재정 관련업무, 상업은행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재정 관련업무는 북한의 재정이 일반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공공재 공급뿐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내용이 훨씬 크고 다양하였다. 따라서 기관·기업소에 대한 재정자금 공급업무는 재정관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이와같은 기업에 대한 예산자금의 수입과 지출 행위를 통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라 한다. 그런데 「중앙은행법」 제정과 함께 일반 상업은행 업무 및 보험 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중앙은행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정 관련 업무도

149) 리원경, “인민경제적자금수요해결의 원칙적방도”,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28~28면.

150) 동 규정은 총칙, 자본금, 기관, 업무, 결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별첨 3> 참조).

크게 축소되었다.

상업은행법의 경우, 그동안 북한이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채택해왔기 때문에 상업은행도 없었으며 상업은행법도 불필요하였다. 단일은행제도는 중앙은행 기능과 국내 금융업무를 하나의 대형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모두 담당한다는 의미이며 대외결제 등 대외금융업무는 ‘조선무역은행’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전문은행 등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여 단일은행제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들은 대부분 특정 권력기관의 무역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의 상업은행과는 차이가 있다(<참고1> 참조).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 이외에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업무와 관련된 법으로는 중앙은행의 화폐조절사업에 관한 「화폐유통법」, 외국인 설립은행과 관련한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있다.

법 내용에 대한 분석만을 근거로 보면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제정의 목적은 북한의 은행제도를 그 동안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서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원적 은행제도에 맞게 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법 제정의 실제 목적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조선중앙은행의 조직개편과 동 법에 근거한 새로운 상업은행이 설립되어야 하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금융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그동안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재정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금융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영기업에 지원하던 국가 재정자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부족자금을 은행대출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분야의 제도개혁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법 제정과 함께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이 금융개혁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

### 1) 중앙은행법

북한의 「중앙은행법」은 다음과 같이 모두 6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중앙은행법의 기본)에서는 중앙은행법의 사명,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 등을 규정
  - 중앙은행의 주요업무는 발권, 통화조절, 금융부문에 대한 지도 통제 등임
- 제2장(중앙은행 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지점 등을 규정
  - 중앙은행은 총재와 부총재, 필요부서 등으로, 중앙은행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총재가 이사장을 겸임

###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 제3장(중앙은행권)에서는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제조, 발행, 교환, 현송, 소각, 보관, 위변조 및 대외반출 금지 등을 규정
- 제4장(화폐유통조직)에서는 화폐 발행 및 통화조절, 결제, 대출(대부), 기준이자율 제정, 채권발행의 등록, 국고대리 등 중앙은행 업무를 규정
  - 화폐의 발행 및 회수를 통해 통화조절사업을 실시하며 신속 정확한 결제업무를 통해 화폐유통을 촉진
  -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업무를 실시하며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돈자리)를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및 지급준비금 적립
  - 이외에 국고대리업무,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 화폐유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조사분석·예측, 고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제5장(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 금융기관 설립승인, 해산·통합, 감독통제, 제재 등을 규정

#### 2) 상업은행법

북한의 『상업은행법』은 다음과 같이 모두 6장 57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상업은행법의 기본)에서는 상업은행법의 사명, 상업은행의 설립·운영, 법 적용대상 등을 규정
  -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대부),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
- 제2장(상업은행의 설립)에서는 상업은행 설립 절차, 상업은행의 구성 등을 규정
  - 상업은행 설립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이 담당
  - 상업은행은 관리, 업무, 정보처리, 양성, 내부경리 등의 부서를 둘 수 있음

- 제3장(상업은행의 업무)에서는 상업은행의 업무인 예금, 대출(대부), 계좌 개설 및 관리, 국내외 결제, 외화 교환, 국고 대리 등의 업무내용을 규정
  -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며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
  - 대출(대부) 원천은 예금, 자체자금, 중앙은행 대출 등으로 구성되며 대출(대부)원천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출 실행시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제3자의 서면 보증을 받도록 규정
- 제4장(상업은행의 회계)에서는 결산 주기, 결산서 작성·제출·보관 등 회계 관련 내용을 규정
- 제5장(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에서는 상업은행 통합 및 해산의 사유, 문서 제출 및 심의, 통합 및 해산시 업무청산 및 채권채무 정리 등을 규정
- 제6장(제재 및 분쟁해결)에서는 제재 내용과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

### 3. 금융법제의 변화

#### 1)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체계가 단일은행제가 아닌 이원적 은행제도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제정은 은행제도를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 볼 때 북한의 은행제도는 1976년 산업은행을 중앙은행에 통합하면서 확립한 단일은행제도를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계획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단일은행제도는 하나의 대형은행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계획경제국가가 취했던 은행제도로서 정부가 세운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동시에 모든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원적 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 수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에 대한 대출 및 예금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대출 및 예금을 취급한다. 상업은행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여 생산부문에 공급하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 때 상업적 이윤동기가 업무수행 원칙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며 국가계획에 의한 기업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은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은행제도가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중앙은행법』 제28조, 제32조 등과 상업은행법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은행법』 제32조151)에서는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하는 대상으로 금융기관만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 기업이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하던 기존의 제도152)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금융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재정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151) 『중앙은행법』 제32조 (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 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152) 그동안에는 기관·기업소·단체 및 개인이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었음

보인다. 2002년 7.1조치 이전의 북한금융은 재정자금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재정의 보조적 역할과 기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을 전후하여 추진된 재정관련 제도개혁으로 기업에 지원되던 재정자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의 금융은 대출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조선중앙은행이 기업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경제계획에 따라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했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는 통화당국으로서의 중앙은행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통화가 증발되었다. 또한 조선중앙은행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중의 유희자금을 흡수하지 못했다.<sup>153)</sup>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매년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금융제도를 변화시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상업은행이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을 축소하고 통화량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앙은행 대신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신뢰회복과 유희자금 흡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법 제정이 은행제도 개혁을 위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금번 법 제정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가 취해오던 제도개혁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해본 후 실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법 정비는 그 다음에 이

153) 일반 주민들은 중앙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자신의 재산규모가 노출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예금을 찾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때에 찾아 쓸 수 없어 일반 주민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최근 북한에서 추진된 다른 제도변화 내용에 비해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크게 앞선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재정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 하였으나 이 정도의 조치로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개혁수준은 이원적 은행제도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볼 수 없다.

중국에서도 1978년 개혁·개방노선 채택이후 1979년부터 몇 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면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1984년 중국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sup>154)</sup>

< 표 14 > 중국 금융개혁의 단계별 추진 현황

단 계	내 용
1단계(1979~83)	-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중국 금융제도의 기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 추진
2단계(1984~93)	- 중국 은행제도의 틀을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
3단계(1994~97)	- 변화된 금융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

## 2) 통화·금융정책 변화

### 가. 중앙은행 업무

#### (1) 변화 이전

그동안 북한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국가재정 관련업무, 상업은행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154) 이러한 변화의 법적 근거인 중국인민은행법은 1995년이 되어야 제정되었다.

① 중앙은행 고유업무 :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화폐발행, 지급결제 등

② 국가재정 관련업무 : 국가예산자금의 수입 및 공급업무

북한의 재정은 일반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공공재 공급뿐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내용이 훨씬 크고 다양하였다. 따라서 기관·기업소에 대한 재정자금 공급을 업무는 재정관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예산자금의 수입과 지출 행위를 통해 북한의 중앙은행은 기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 한다.

③ 상업은행 및 보험업무 : 국영기업에 대한 예금·대출 업무와 보험업무 수행

북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보험업무는 국내보험중에서 생명보험업무에 국한된다.

④ 기타 업무

기관·기업소의 기계설비 등의 고정재산 등록 및 평가, 귀금속 관리 업무 등이 속한다.

## (2) 변화 이후

『중앙은행법』 제정과 함께 일반 상업은행 업무 및 보험 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중앙은행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정 관련 업무도 크게 축소되었다.

① 중앙은행 고유업무

화폐발행,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업무는 종전과 같이 중앙은행이 수행한다. 화폐는 금융기관 대출, 외화·귀금속·증권매매

등의 방법으로 발행된다. 다만, 화폐제조 규모는 국가가 정하며,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 내에서 통화조절사업을 실시한다.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기준이자율 제정(『중앙은행법』 제30조), 금융기관 대출(『중앙은행법』 제28조), 지불준비금 적립(『중앙은행법』 제32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이들 업무의 수행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율성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담당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 내용은 달라졌다. 그동안 기업간 지급결제를 담당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상업은행이 기업간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중앙은행은 은행간 결제만 담당하게 되었다.

### ②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고대리업무

종전의 ‘국가예산자금의 수입 및 공급’이라는 표현 대신 ‘국고대리’라는 표현을 사용(『중앙은행법』 제38조 및 『상업은행법』 제40조)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재정계획 수립, 재정자금의 수입 및 지출, 이를 통한 기업 통제 등 재정관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중앙은행이 이제는 단순히 국가재정 관련 업무를 정부 대신 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 기능

금융기관의 설립 승인 및 해산·통합, 금융감독 및 지도, 금융회계 항목과 계산방법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일반 상업은행이 없으며 부문별 전문은행 등은 당이나 군부 등의 권력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북한

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중앙은행에서 담당한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금융을 재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과 북한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의 업무 중에서 외환관리업무는 북한 중앙은행이 담당하지 않고 기준환율(환자시세) 결정 등 외화관리 업무는 『무역은행』이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 중앙은행의 업무 중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국가재산 관리, 귀금속 관리 등은 한국은행이 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설립 승인, 감독 등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가 담당하는 업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 ④ 기타 업무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필요하게 된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채권발행의 등록 관리, 금융정보 교환, 조사·통계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한다. 고정재산 관리, 귀금속관리 등의 업무는 과거와 같이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 나. 화폐단위

『중앙은행법』 제15조<sup>155)</sup>에서는 기본단위에 대한 언급만 있고 보조단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화폐의 기본단위는 『원』으로 변화가 없으며 보조단위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6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제2조에는 보조단위로 『전』을 규정하고 있어 보조단위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7.1조치로 상품의 가격과 임금이 약 20배 정도 인상되면서 『전』의 사용은 사실상 없어져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55) 『중앙은행법』 제15조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다. 현금 및 무현금 구분 폐지

북한은 그동안 화폐를 현금과 무현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다. 무현금은 일종의 예금통화로서 주로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 등의 생산수단 거래에 사용되며 중앙은행 지점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된다. 무현금은 국가 및 은행의 통제 하에 유통되며 현금으로 인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7.1조치 이후 기업간 거래의 일부에 대해 시장가격에 의한 현금거래가 인정되면서 무현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무현금 증가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현금뿐 아니라 무현금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현금과 무현금의 구분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에서는 현금과 무현금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무현금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sup>156)</sup>

『상업은행법』 제31조<sup>157)</sup>에서는 대금결제 방식으로 무현금결제라는 용어 대신 ‘환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치’는 그동안 사용하던 무현금결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보이며 우리의 ‘이체’와 같은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sup>158)</sup>

---

156) 한편, 『화폐유통법』에서는 현금유통(제2장)과 무현금유통(제3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무현금결제를 중앙은행이 하도록 규정(제29조)하고 있다.

157) 『상업은행』 제31조 (대금의 결제)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환치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58)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은 환치를 “대금의 지불을 청구 또는 위탁하는 결제문서에 의하여 은행에 설치된 돈자리사이에 자금을 옮겨 놓는 방법으로 화폐거래를 진행하는 무현금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298면.

## 라. 통화정책

### (1) 통화정책의 목표

『중앙은행법』 제3조<sup>159)</sup>의 문구로 볼 때 통화정책의 목표는 화폐가치와 환율의 안정이다. 그동안 통화정책의 목표를 ‘화폐유통의 안정 공고화’라고 표현하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환율의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화폐유통의 안정 공고화’는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주된 의미는 화폐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유통에 필요한 적정 양의 화폐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환율의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벨기에 등 소규모 개방국가들이다.

### (2) 통화정책 대상 통화

『중앙은행법』 제25조와 제26조로 볼 때 통화정책의 대상도 현금과 예금통화(무현금)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통화정책의 대상으로 유통화폐를 표현할 때에는 주로 현금통화를 의미하였으나 『중앙은행법』 제25조와 제26조<sup>160)</sup>를 볼 때 유통화폐는 예금통화(무현금)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화정책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59) 『중앙은행법』 제 3 조 (중앙은행권과 화폐유통원칙)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폐유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와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160) 『중앙은행법』 제25조 (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유통에 내보내거나 유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중앙은행법』 제26조(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화폐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 표 15 > 통화·금융정책 관련 변화 내용

구 분	법제정 이전	법제정 이후
중앙 은행 고유업무	업무범위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달라짐	
통화정책 대상	현금 통화량	현금 + 예금 통화량
화폐발행 통로	기업 대출	상업은행 대출
지급결제 대상	기업간 결제	상업은행간 결제
국가재정 관련 업무	국가재정의 일부	국고 대리
예금계좌 개설	국영기업 예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예금계좌 개설
금융 감독	—	금융기관 설립승인 및 감독
기타 중앙은행 업무	보험, 고정재산 등록	보험, 고정재산 등록 + 외환매매, 채권 등록 등

### 3) 상업 금융제도 변화

#### 가. 예금제도

중앙은행이 취급하던 기관·기업소 및 일반 주민의 예금업무는 상업은행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중앙은행법』 제32조).

그동안 구분해 사용해 왔던 예금과 저금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서는 모두 예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금은 기관·기업소가 은행에 맡긴 예치금, 저금은 일반인의 유휴자금을 은행에 맡긴 예치금을 의미한다.

기관·기업소는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재정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은행에 예치(예금)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예금에는 이자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스스로 형성한 유휴자금을 은행에 예치(저금)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금에는 비록 작지만 일정 정도(3~4%)의 이자가 지급된다.

상업은행은 예금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함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상업은행법』 제19조). 이는 국내 유희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예금의 지불과 비밀 보장 조항을 포함하였다(『상업은행법』 제20조). 이 조항은 그동안 일반인들의 예금기피현상의 원인이었던 재산규모 노출이나 예금 인출 애로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불준비제도를 도입하였다(『상업은행법』 제21조 및 제22조). 상업은행은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중앙은행에 준비금을 예금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상업은행법』 제30조(돈자리의 개설)에서 개인 계좌(돈자리)에 기관·기업소·단체의 자금을 예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단체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대출(대부)제도

##### (1) 대출(대부) 대상

그동안에는 중앙은행이 기관·기업소·단체에 대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앙은행법』 제28조(금융기관의 대부)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상업은행의 대부대상 확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대부는 그 대상을 기관·기업소 및 단체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중앙은행법』 제정으로 이원적 은행체도로 전환될 경우 상업은행에서 일반주민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업은행법』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상업은행법』 제23조에서는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하기 어

려운 일반인은 상업은행의 대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활동을 하는 일반인도 있을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 (2) 담보 및 보증제도

『상업은행법』 제26조에서는 ‘차입자의 자금으로 마련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에서도 담보 및 보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북한의 기업은 대부분 국가소유이며 대부대상이 기관·기업소·단체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중앙은행이 대부를 줄 때 담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담보 및 보증제도의 도입은 생산수단인 부동산이 대부분 국가소유인 사회주의와는 배치되는 법조항으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시된다.

### 다. 신용창조 가능 여부

그동안 북한에서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이루어진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신용창조를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웠다. 북한에서도 자금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은행이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sup>161)</sup> 결국 사회주의 은행은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후에는 신용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신용창조를 자본주의의 폐해라고까지 주장하였으나 이원적 은행제도에 따라 제정된 법체계 하에서는 통화승수만큼의 신용창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업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제공

161) 북한의 리상조는 대부금에 의하여 형성된 화폐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신용창조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나(리상조, “은행자원과 그 구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홍영희(1996)와 리원경(1997)은 이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상업은행에 대하여 예금, 자체자금 및 중앙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용창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 기 타

(1) 상업은행 이자율 및 대고객환율

상업은행의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이자율과 변동폭 범위 내에서 상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상업은행법』 제28조). 그리고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기준환자시세)와 변동폭 범위 내에서 상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정도록 하였다(『상업은행법』 제33조).

기준환율(기준환자시세)의 결정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볼 때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무역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채권 및 외환시장 형성

상업은행의 업무에 금융채권 발행 또는 매매, 외환 매매 등을 포함시킨 규정<sup>162)</sup>을 볼 때 채권 및 외환시장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채권의 발행 및 매매’ 관련 규정은 채권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외환 매매(화폐의 사고팔기)’ 관련 규정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표 16 > 상업 금융제도 관련 변화 내용

구 분	법제정 이전	법제정 이후
민간 예금 담당	중앙은행	상업은행
지불준비금 제도	—	자체보유 + 중앙은행 예치

162) 『중앙은행법』 제29조(화폐의 사고팔기), 제33조(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상업은행법』 제35조(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제38조(화폐의 팔고사기) 등

제 3 장 북한 재정법제의 주요 내용

구 분	법제정 이전	법제정 이후
민간 대출 담당	중앙은행	상업은행
담보 및 보증제도	—	동산·부동산담보+ 제3자보증
이자율	국가 : 결정 중앙은행 : 시행	중앙은행: 기준이자율 제정 상업은행: 기준율과 변동폭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
금융 시장	—	채권·외환시장 형성 가능

4) 기타 제도변화

가. 결제 제도

기업이나 개인의 대금결제, 대외결제 등은 상업은행이 담당하며,<sup>163)</sup> 금융기관간 결제는 중앙은행을 통해 실시한다(『중앙은행법』 제32조).

나. 국고 업무

종전처럼 중앙은행이 수행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도 크게 줄었으며 그동안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맡아오던 업무를 상업은행과 함께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sup>164)</sup>

5) 변하지 않은 주요 제도

가. 고정재산 관리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고정재산관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상업은행도 고정재산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화에 큰

163) 『상업은행법』 제29조(결제의 조직), 제31조(대금의 결제) 및 제32조(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164) 『중앙은행법』 제38조(국고대리), 『상업은행법』 제40조(국고업무의 대리)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65)</sup>

#### 나. 중앙은행의 기구

중앙은행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중앙은행법』 제2장(중앙은행의 기구) 참조).

#### 다. 중앙은행권 관리

중앙은행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의 방식을 법제화한데 불과하며 2003년 6월 개정된 『화폐류통법』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중앙은행법』 제3장(중앙은행권) 참조).

#### 라. 기 타

상업은행법의 기본 및 설립 관련 규정 등<sup>166)</sup>은 상업은행법이 새로 제정되어 동 내용이 새로운 것이나 대부분 외국투자은행법 내용과 유사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다.

## 4. 금융법제 개편의 의의와 과제

### 1) 금융법제 개편의 의의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의 제정은 법 내용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계획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서 금융제도 개혁의 차원을 넘어 체제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5) 『중앙은행법』 제34조(고정재산의 장악), 『상업은행법』 제37조(고정재산의 등록)

166) 『상업은행법』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 법의 제정에 따라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또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판단은 7.1조치 시행당시의 개혁의지가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고 국가에 의한 식량배급제도 회복을 위해 시장에서의 곡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관련법을 정비했다면 법제정 취지를 담고 있는 전국 규모의 상업은행이 설립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200여개에 달하는 중앙은행의 지점조직이 정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금번 법 제정은 7.1조치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추어 금융제도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되나 이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법 모두 미비점이 많으며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하에서의 금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상업은행이 설립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법』 제25조<sup>167)</sup>의 설명을 보면 이원적 은행제도에서의 화폐발행과 통화량 증가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폐의 발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했을 때 이루어지며 통화량 증가는 금융기관의 민간에 대한 대출 증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대부)이 화폐의 발행 또는 유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167) 『중앙은행법』 제25조 (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유통에 내보내거나 유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이러한 혼란은 북한이 그동안 단일은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원적 은행제도 하에서의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경제저널인 『경제연구』에서 금융개혁과 관련한 논문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금융개혁을 추진하려는 생각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리창혁<sup>168)</sup>은 현금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통화관리 대상을 무현금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생산수단들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부터는 무현금 증가가 현금으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현금과 잉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따라서 현금과 무현금을 모두 포함하는 통화조절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리원경<sup>169)</sup>은 무현금을 통화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영의<sup>170)</sup>는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불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불준비금제도가 새로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은행(무역은행이나 부문별 전문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경제연구』를 통해 분석한 북한의 금융개혁 의지는 본 법 제정이 의도하는 수준보다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창혁과 리원경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과 무현금의 구분을 없애는데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홍영의가 설명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제도 역시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은행을

168) 리창혁, “화폐류통법칙의 작용령역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169)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170) 홍영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류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해석된다.

## 2) 향후 과제

법 내용과 북한의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북한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 취지에 맞는 상업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법 제정으로 은행제도의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최근 들어 북한의 개혁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북한이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취지에 맞는 상업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민들에 대한 상업은행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예금기피현상을 완화하여 유희화폐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회복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은행법』 제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금의 지급(지불)과 비밀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업적 원칙에 따른 예금 및 대출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이자지급이 필요하다. 기존 중앙은행의 예금이자율은 3~4%의 낮은 수준인데 반해 암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는 시중의 유희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대출은 그동안 경제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공되는 등 다소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원적 금융제도 하에서는 은행대출이 재정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말아야 하며 철저하게 상업적 원칙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출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관련 제도를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넷째,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시장에서의 물가안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현금통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통화정책이 법적으로는 예금통화까지 통화정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준비율, 채권 매매, 기준이자율 정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경제연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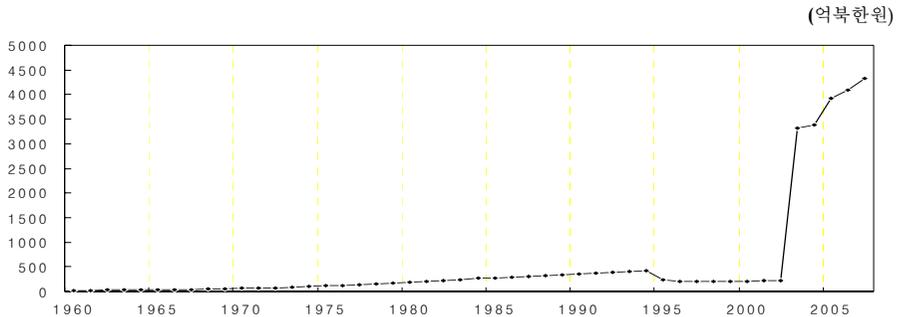
## 제 4 장 북한 재정의 운용 현황과 과제

## 제 1 절 북한 재정의 운용 현황

## 1. 국가예산의 운용 현황

북한은 매년 3~4월경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발표 내용과 형식을 바꾸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발표내용과 IMF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북한의 예산규모를 정리하면 <그림3>과 같다.<sup>171)</sup>

&lt;그림 3&gt; 북한의 예산 규모 추이



	2000	2001	2002 <sup>1)</sup>	2003	2004	2005	2006	2007	
북한원기준 (억북한원)	204 (0.1)	216 (5.7)	222 (2.8)	2,885 (1,237.4)	3,294 (14.2)	3,513 (6.7)	3,886 (10.6)	4,197 (8.0)	4,332 (3.2)
달러화 기준 (억달러)	93.2 (-0.8)	97.6 (4.8)	100.3 (3.0)	18.9 (-80.6)	22.7 (20.1)	25.3 (11.5)	27.8 (10.0)	29.7 (6.6)	31.0 (4.6)

주: 1) 2003년부터 재정규모가 크게 변동한 것은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7.1)에 따른 가격인상(약 25배) 및 환율상승(약 70배)에 기인

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171) 구체적인 수치는 <표3> 참조

북한 예산은 대체로 5~10%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5년과 2002년에는 큰 폭으로 변했다.

1995년에는 전년대비 -41.6%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예산규모가 1957년 이후 1994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172)</sup>

1995년의 예산감소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능성으로 ①경제규모 축소의 반영, ②예산관련 제도의 변화, ③예산편성 기준변경 등 3가지 정도가 제기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극심한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부문이 확산되는 한편 계획경제부문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수입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던 기관·기업소의 유동자금공급 등을 1995년을 전후하여 기관·기업소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하였다.<sup>173)</sup> 이와 함께 그동안 부풀려져 있던 예산규모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도 7.1조치에 따른 국정가격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변했다. 2002년 예산을 변화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전년의 12.4배에 해당한다. 임금(약 20배) 및 국정가격(약 25배) 인상 수준을 감안할 때 예산도 20~25배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예산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후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2007년 예산(4,332억북한원)도 2002년 예산(221.7억북한원)의 19.5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로 예산

172) 북한이 IMF에 보고한 자료(1997.9)를 통해 1995~1997년 예산규모를 알 수 있다.

173) 자세한 제도변경 내용은 본 논문의 '4장 2절 가. 예산지원 축소 및 기업 내부유보 확대' 참조

에서 지원되는 기업자금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예산을 국정환율로 환산하여 미 달러화로 표시할 경우 북한의 재정규모는 2002년에 전년대비 80.6%나 축소되었다. 이는 가격과 임금의 인상폭(약 20~25배)에 비해 국정환율 상승폭(약 70배)이 컸기 때문이다.

## 2. 예산수입의 추이

북한이 예산규모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현상은 총액의 경우보다 개별항목이 더 심하다. 개별항목의 경우 금액은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총액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발표되고 있다.

### 1) 예산수입 항목<sup>174)</sup>

2001년까지의 예산수입 항목은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입금, 봉사료 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수입,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002년 시행된 재정관련 개선조치로 일부 항목이 통합 또는 폐지되어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사회보험료 수입, 토지사용료 수입, 국가재산판매 가격편차수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등으로 개편되었다.<sup>175)</sup>

그 후 감가상각금이 2005년부터 다시 국가예산수입 항목에 편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토지사용료가 부동산사용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사회보험료를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부담하도록 확대하였다(<표17> 참조).

174) 자세한 내용은 2005년 7월에 제정된 『예산수입법』 등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175) 자세한 제도변경 내용은 본 논문의 '4장 4절 다. 재정관련 제도개선 내용' 참조

< 표 17 > 재정관련 개선조치 전후 예산 수입항목 비교

<7.1 조치 이전>		<7.1 조치>	<7.1 조치 이후>
국가기업이익금		국가기업이익금(통합)	좌 동
봉사료 수입금			
거래 수입금	국영기업소 생산품 관련	협동단체이익금(통합)	좌 동
	생산협동조합 생산품 관련		
협동단체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 (폐지)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재편입)
사회보험료 수입		사회보험료 수입	개인 및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확대)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좌 동	좌 동
-		토지사용료 수입(신설)	부동산사용료 (확대개편)

‘국가기업이익금’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의 이윤 중에서 기업소 내부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체제의 법인소득세와 비슷한 일종의 직접세로 볼 수 있다.

‘거래수입금’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때 일정금액을 거래수입금 명목으로 받아들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뿐 아니라 협동단체인 생산협동조합<sup>176)</sup>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다. 한편 봉사부문 기업소의 봉사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봉사료수입금’이라 하여 거래수입금과 구분하고 있으나<sup>177)</sup> 부과대상이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 이외에는

176) 생산협동조합이란 협동단체의 한 형태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와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177) 북한이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봉사료의 원천이 생산

큰 차이가 없으며 국가예산수입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봉사료수입금을 거래수입금에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은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의해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국가기업이득금} = \text{확정소득(총판매수입 - 비용)} \times \text{납부비율}$$

총판매수입은 생산물 판매수입, 건설조립 작업액, 대보수 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등을 의미한다. 특이할 점은 생산물 판매수입을 계산할 때 국정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가격보다 많이 받아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장에서의 판매활동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단체<sup>178)</sup>이익금’은 국가기업이익금과 비슷한 것으로서 부과대상이 국영기업소가 아닌 협동단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협동단체이익금 납부 대상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이며 협동농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동단체이익금과 생산협동조합의 생산물에 부과되었던 거래수입금은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의해 ‘협동단체이득금’으로 통합되었다.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은 국가가 제공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일종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시초가격 보상 몫(또는 대보수비 보상 몫<sup>179)</sup>$$

과정에서 창조된 순소득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78) 협동단체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로 하고 생산과 상품유통 등의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직으로서 협동농장과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179) 대보수비용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고정재산 개·보수 비용을 의미하며,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은 2002년부터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에 남겨두고 생산확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가 2005년부터는 국가에 납부하도록 다시 변경되었다. 재정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입원 확보 등을 위해 다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편입 이후에도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 납부를 제외하고 있어,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고정재산을 자체자금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 수입’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예산수입 항목이다. 그동안에는 근로자만이 납부대상이었으나 예산 확대 차원에서 2006년부터 기업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다. 다만, 협동농장원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 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제도개선 이전에 개인이 부담하던 사회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개인부담 사회보험료} = \text{월노동보수액} \times \text{납부 비율}$$

일반 종업원은 1%, 협동단체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7%의 비율로 납부하게 되는데, 노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따라 2002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토지사용료’를 2006년에 확대 개편한 것이다. 토지사용료<sup>180)</sup>는 토지를 이용하여 기관·기업소·단체가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 부류별<sup>181)</sup>, 지목별, 등급별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매년 1회 납부하되 1년 동안 적립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180) 토지사용료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신보(2004.1.21)는 토지사용료와 용수, 전기, 비료, 농약, 지원노력비 등의 합계액이 농장 총수입의 50%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181) 1부류(협동농장, 농목장의 토지, 탄광에 소속된 후방정리용 토지, 시·군이 원료기지로 이용하는 토지), 2부류(기관·기업소·단체의 부업토지, 실습토지, 원료기지가 아닌 외화별이기지로 이용하는 토지)로 구분된다.

을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사용료<sup>182)</sup>는 국가소유인 도로(다리), 강이나 하천, 호수, 산림, 지하자원 등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부과방법 등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국가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수입금<sup>183)</sup>, 무역편차이득금, 차관 또는 연불수입금 등이 포함된다. ‘국가재산판매수입금’은 국가소유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 자체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국가소유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은 기관·기업소·단체가 설비, 비품 등 국가자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을 의미하며, 자체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수입에는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이득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이익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 또는 지역적인 가격변동 조치로 발생한 수입을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것이며, ‘무역편차이득금’은 무역활동과정에서 조성된 것을 말한다.

‘기타수입금’은 경영활동과 무관하게 얻은 수입금, 통제기능 수행 중 얻은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예산수입 항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노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개입수입금 등이 있다. ‘무상노력동원수입’은 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이들의 노동보수 몫을 국가에 납부하

182) 연합뉴스(2006.8.10)는 부동산사용료 부과 등을 위하여 북한 전역에서 부동산 실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동아일보(2006.4.13)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부동산을 내·외국인에게 임대하거나 개발 및 장기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개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183) 가격편차수입은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물품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국가예산수입이다. 예를 들어 국정가격이 올랐을 때 재고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익이 되는데 이 이익은 가격편차수입으로 국가에 납부된다.

는 것이며,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은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기관·기업소·단체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산보험료’는 보험기관이 기관·기업소·단체에서 받은 연간 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며, ‘개인수입금’은 일반 주민이 시장 등에서의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기관·기업소·단체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예산수입 가운데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사회보험료와 부동산사용료 등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기업소와 협동단체로부터 징수된다.

## 2) 예산수입 항목별 규모

북한의 발표내용, IMF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예산수입내역을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 표 18 > 북한의 예산수입 추이(예산 기준)

(단위: 백만북한원,%)

		1991	1996	2001	2002
총 예산수입		37,121	20,320	21,571	22,170
국가 기업 이득금	거래수입금	17,252 (46.5)	8,080 (39.8)	9,319 (43.2)	17,204 (77.6)
	국가기업이익금	14,514 (39.1)	6,290 (31.0)	7,097 (32.9)	
소 계		31,766 (85.6)	14,370 (70.8)	16,416 (76.1)	17,204 (77.6)
감가상각금		2,510 (6.8)	2,250 (11.1)	..	—
사회보험료		77 (0.2)	90 (0.4)	..	..
기 타		2,706 (7.4)	3,430 (16.9)	..	..

주 1) 북한이 발표한 전년대비 증가율 등을 근거로 추정된 수치임

2) ( )내는 구성비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IMF(1997), 노동신문

1996년에는 1991년에 비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늘어났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총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p, 8.1%p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감가상각금은 금액은 2억 6천만원 줄어들었으나 비중은 오히려 4.3%p 늘어났으며, 사회보험료와 기타수입은 금액과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sup>184)</sup>

이는 1995년을 전후하여 있었던 재정체도의 변경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예산수입의 일부를 기업 내부에 유보하도록 재정체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항목별 비중을 발표하지 않고 대신 항목별 증가율만을 발표하고 있어 항목별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항목별 증가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04년까지는 국가기업이익금이 예산수입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나 2005년부터는 여타 수입항목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결산에서는 협동단체 이득금이 전년대비 각각 24.3% 늘어나 국가기업이익금 증가율(+14.2%)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 예산에서는 협동단체 이득금, 사회보험료, 부동산 사용료가 전년대비 각각 23.2%, 141%, 12% 증액 편성되어 국가기업이익금(+7.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는데 국가기업이익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북한의 재정당국이 새로운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 수입 관련 제도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에는 수입관련 제도변화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수입관련 제도변화를 통한 수입증대도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식 대신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84) 사회보험료와 기타는 각각 1천 3백만원(+0.2%p), 7억 2,400만원(+9.5%p) 늘어났다.

제 4 장 북한 제정의 운용 현황과 과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9 > 북한의 예산총액 발표내용

	예 산		결 산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1990	356억 5,610만원		356억 9,041만원	355억 1,348만원
1991	371억 2,060만원		371억 9,484만원	369억 924만원
1992	395억 92만원		395억 4,042만원	393억 342만원
1993	404억 4,985만원		405억 1,720만원	402억 4,297만원
1994	415억 2,519만원		416억 2,000만원	414억 4,215만원
1995~97	—		—	—
1998	—		197억 9,080만원	200억 1,521만원
1999	203억 8,172만원		198억 103만원	200억 1,821만원
2000	204억 532만원		209억 343만원	209억 5,503만원
2001	215억 7,080만원		216억 3,994만원	216억 7,865만원
2002	221억 7,379만원		계획의 100.5%	계획의 99.8%
2003	전년결산 수입의 113.6%, 지출의 114.4%		계획의 100.9%	계획의 98.2%
2004	전년결산 수입의 105.7%, 지출의 108.6% 2004년 지출 집행액이 계획의 99.3%		3,375억 4,600만원	3,488억 700만원 계획의 99.3%
2005	전년결산 수입의 115.1%, 지출의 111.4% 3,885억 9,000만원		계획의 100.8%	계획의 104.4%
2006	전년결산 수입의 107.1%, 지출의 103.5%		계획의 97.5%	계획의 99.9%
2007	전년결산 수입의 105.9, 지출의 103.3%		—	—

자료 : 북한의 각 연도 예산·결산 발표 내용

&lt; 표 20 &gt; 북한의 항목별 예산수입 발표내용(예산 기준)

		발표 내용	
2001		거래수입금: 총예산의 43.2%    국가기업이익금: 총예산의 32.9%	
2002		국가기업이익금: 총예산의 77.6%	
2003		국가기업이익금: 지난해의 105%    협동단체이익금: 지난해의 103.3% 사회보험료수입: 지난해의 106.7%    토지사용료수입: 지난해의 103.7%	
2004		국가기업이익금 : 지난해의 116.5%	
2005	예산	국가기업이익금: 지난해의 113.5%    협동단체이익금: 지난해의 108.4% 사회보험료수입: 지난해의 103.0%	
	결산	국가기업이익금: 지난해의 114.2%    협동단체이익금: 지난해의 124.3% 사회보험료수입: 지난해의 105.7%    기타 수입 : 지난해의 100.3%	
2006	예산	국가기업이익금: 지난해의 107.2%    협동단체이익금: 지난해의 123.2% 사회보험료수입: 지난해의 241%    부동산 사용료 : 지난해의 112%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 지난해의 101.8%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 지난해의 101.7% 기타 수입 : 지난해의 100.9%	
	결산	—	
2007		국가기업이익금: 지난해의 106.4%    협동단체이익금: 지난해의 104.5%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 지난해의 109.6% 사회보험료수입: 지난해의 115.1%    부동산 사용료 : 지난해의 115.4%	

자료 : 북한의 각 연도 예산 발표 내용

### 3. 예산지출의 추이

#### 1) 예산지출 항목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은 인민경제비, 사회·문화 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비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인민경제비

인민경제비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확대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본건설 자금공급, 대보수 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인민경

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건설 자금공급’은 고정재산을 신설하거나 단순 재생산 또는 확대 재생산하는데 지출되는 예산항목으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조성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지출뿐 아니라 기관·기업소의 고정재산 건설을 위한 자금지출도 포함하고 있다. 기관·기업소에 대한 기본건설 자금공급은 생산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산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기관·기업소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기본조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본건설 자금공급은 1980년대 말 일부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sup>185)</sup>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크게 축소되었다.<sup>186)</sup> ‘대보수 자금공급’은 고정재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항목으로서 2001년까지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었으나 2002년 시행된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sup>187)</sup>

‘유동자금공급’은 기업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및 반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 항목으로서 1964년 유일적 자금공급체계가 확립된 이후 모든 유동자금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1985~95년 중에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유동자금을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로 충당해야 한다.<sup>188)</sup> ‘인민경제사업비’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지만 다른 항목에 넣기 곤란한 예산지출을 모두 포괄하는 항목으로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추가적 시책비, 공업사업비, 농업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과학기술발전사업비, 국토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185) 자세한 내용은 ‘4장 2절 가. (2) 기본건설자금 지원대상 축소’ 참조

186) 기본건설 자금공급 대상 중에서 고정재산의 교체, 즉 단순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소 자체자금(감가상각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확대 재생산의 경우에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4장 4절 다. (2) 감가상각금의 국가납부 폐지 및 예산지출항목 조정’ 참조

187) 자세한 내용은 ‘4장 4절 다. (2) 감가상각금의 국가납부 폐지 및 예산지출항목 조정’ 참조

188) 자세한 내용은 ‘4장 2절 가. (1) 유동자금 공급제도 폐지’ 참조

‘추가적 시책비’는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식량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은 가격에 배급하기 위한 식량가격편차보상금, 학생이나 어린이의 옷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가격편차보상금, 그리고 석탄보상금, 연료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추가적 시책비 중에서 식량가격편차보상금은 구매가격을 현실화한 2002년 7.1조치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가격편차보상금 등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각종 사업비는 공업 및 농업발전을 위한 R&D 투자, 도시환경미화 및 각종 공공시설 관리, 대외경제거래 관련 비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던 기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부분 폐지 또는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경우 유동자금공급은 1985~95년 사이에, 대보수 자금공급은 2002년에 폐지되었으며 기본건설자금도 1985~95년 중 일부 축소된 후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로 크게 축소되었다.<sup>189)</sup>

< 표 21 > 인민경제비 관련 제도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사항	<변경후>
기본건설 자금공급	고정재산의 신설	현행과 동일	기본건설 자금공급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	일부 자체자금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고정재산의 단순재생산	제도적으로는 폐지 단, 감가상각금 적립시까지 존속	-
대보수자금공급		폐 지	-
유동자금공급		폐 지	
인민경제 사업비	추가적 시책비	대폭 축소	인민경제사업비
	기 타	현행과 동일	

189) 북한이 2002년 결산 발표시부터 인민경제비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인민경제사업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인민경제비에서 인민경제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지출 항목의 규모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총 인민경제비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나. 사회·문화 시책비

사회·문화 시책비는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체육, 과학,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사회·문화 시책비는 2002년 재정관련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다만, 세부내역의 예산지출의 책임이 중앙예산에서 지방예산으로 변경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 다. 국방비 및 국가관리비

국방비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 항목으로서 국방공업발전,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및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등에 지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sup>190)</sup> 그러나 국방비예산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역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방비 성격의 지출 중 일부가 다른 예산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국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출항목으로서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 사회안전 및 사법기관들의 경비예산이 포함되며 내용별로 보면 생활비, 여비, 사무통신비, 설비 및 비품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 2) 예산지출 항목별 규모

예산지출의 항목별 규모는 예산수입의 경우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발표되고 있으나 발표 항목이나 내용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 정확한

---

190)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수요의 변동은 국가재정구조의 일정한 변화를 동반하며, 해당 사회제도하에서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구조는 매 시기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이 다른 만큼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선군시대와 같은 오늘의 조건에서는 자금수요구조가 국방력강화와 관련된 자금수요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오선희,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35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애로가 있다(<표22> 참조).

< 표 22 > 북한의 항목별 예산지출 발표내용

	인민경제비		사회·문화 시책비1)		국방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1990	지난해의 106.8%	지난해의 106.6%	지난해의 106.2%	지난해의 106.0%	총예산의 12.1%	총예산의 12.0%
1991	지난해의 104.6%	지난해의 104.4%	지난해의 104.0%	지난해의 103.5%	총예산의 12.3%	총예산의 12.1%
1992	지난해의 106.5	지난해의 106.3%	지난해의 111.6%	지난해의 108.4%	총예산의 11.6%	총예산의 11.4%
1993	지난해의 103.0%	지난해의 102.5%	지난해의 102.1%	지난해의 102.5%	총예산의 11.6%	총예산의 11.5%
1994	지난해의 103.2%	—	지난해의 102.8%	—	총예산의 11.6%	총예산의 11.4%
1995 ~97	—	—	—	—	—	—
1998	—	—	—	—	—	총예산의 14.6%
1999	지난해의 102%	—	—	—	총예산의 14.6%	총예산의 14.6%
2000	—	총예산의 40.1%	—	총예산의 38.2%	총예산의 14.5%	총예산의 14.3%
2001	지난해의 102.7%	총예산의 42.3%	지난해의 102.5%	총예산의 38.1%	총예산의 14.5%	총예산의 14.4%
2002	92.3억원	—	—	—	총예산의 14.5%	총예산의 14.9%
2003	—	—	—	총예산의 40.5%	총예산의 15.4%	총예산의 15.7%
2004	—	총예산의 41.3%	—	총예산의 40.8%	총예산의 15.5%	총예산의 15.6%
2005	—	총예산의 41.3%	—	—	총예산의 15.9%	총예산의 15.9%
2006	—	총예산의 40.8%	지난해의 103%	—	총예산의 15.9%	총예산의 16.0%
2006	—	—	—	—	총예산의 15.8%	—

주 1) 2001~2003년은 인민적시책비임

자료 : 북한의 각 연도 예산·결산 발표 내용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북한 예산의 지출항목별 규모를 정리하면 <표23>과 같다.

< 표 23 > 연도별 예산지출 추이(결산기준)

(단위 : 북한만원,%)

	인민경제비	사회·문화 시책비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국가관리비
1990	2,399,145 (67.6)	669,279 (18.8)	426,162 (12.0)	56,762 (1.6)
1993	2,929,067 (67.8)	765,908 (19.0)	462,794 (11.5)	66,528 (1.7)
1996 <sup>1)</sup>	1,240,000 (60.2)	500,000 (24.3)	300,000 (14.6)	20,000 (1.0)
2000	840,297 (40.1)	800,482 (38.2)	299,657 (14.3)	155,067 (7.4)
2001	917,007 (42.3)	825,956 (38.1)	322,172 (14.4)	112,729 (5.2)
2002	· (·)	· (·)	· (14.9)	· (·)
2003	· (·)	· (40.5)	· (15.7)	· (·)
2004	14,405,729 (41.3)	14,231,325 (40.8)	5,441,389 (15.6)	802,256 (2.3)
2005	16,755,410 (41.3)	· (·)	6,450,630 (15.9)	· (·)
2006	17,106,694 (40.8)	· (·)	6,708,508 (16.0)	· (·)
2007 <sup>2)</sup>	· (·)	· (·)	6,854,114 (15.8)	· (·)

주 1) IMF 보고서 내용      2) 예산 기준

자료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1997, 노동신문

북한의 예산지출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1996년 이후 북한의 인민경제비가 규모나 비중 면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총 예산지출 대비 인민경제비 비중은 67.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이보다 27.7%p 줄어든 40.1%로 축소되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계획경제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일부 독립채산제 기업소에서 시행하던 자체자금에 의한 지출 제도, 즉 유동자금 및 일부 기본건설자금을 자

체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본격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sup>191)</sup>

2002년 이후에도 재정관련 개선조치로 대보수 자금공급 및 기본건설 자금공급의 축소로 인민경제비는 더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02년 결산부터 2004년 예산까지 인민경제비 대신 인민경제비의 한 부분인 인민경제 사업비만 발표하였다. 이는 인민경제비 축소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결산에서는 인민경제비 비중이 40.8%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004년의 사회·문화 시책비 비중으로서 국가관리비 비중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경제비 비중이 사회·문화 시책비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비 비중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6년 결산에서는 1976년(16.8%) 이후 처음으로 16%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15.8% 소폭 낮아졌다.<sup>192)</sup>

< 표 24 > 북한의 국방비 비중 추이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 기준	14.6	14.5	14.5	14.5	14.4	15.4	15.5	15.9	15.9	15.8
결산 기준	14.6	14.6	14.3	14.4	14.9	15.7	15.6	15.9	16.0	··

191)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4장 2절 가. 예산지원 축소 및 기업 내부유보 확대' 참조

192) 북한 내에서도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국방부문의 자금수요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예산편성에서 수입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사업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홍성남, 앞의 논문, 28면 및 32면.

## 제 2 절 북한 재정의 평가 및 과제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0년대 말에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을 막고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2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재정관련 제도의 최근 변화는 그동안 북한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도 제한되어 있어 이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경제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최근 북한이 추진한 재정관련 제도개선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재정관련 개선조치의 의의

그동안 북한이 추진한 재정관련 개선조치는 수입 및 지출구조 변화, 재정의 분권화, 은행의 역할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의 경제계획의 관리방식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1) 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북한의 예산수입은 국영기업의 순소득을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단순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협동농장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원이 다양해졌다. 그동안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국가납부금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개인으로부터는 사회보험료 수입 징수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 시장 판매소득에 대한 국가납부금 등 기업뿐 아니라 협동농장이나 개인을 징수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산수입이 생겼다.

예산지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졌으며 대부분이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에 지출되고 있다. 국가가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공급하는 국가예산지출에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유동자금 등이 있었으나 유동자금 공급제도는 1985~95년 중에, 대보수자금 공급제도는 2002년에 폐지되었으며 기본건설 자금공급 역시 1985~95년과 2002년에 크게 축소되어 고정재산의 신설 또는 확대재생산 중 일부만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결국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은 고정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로 충당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 2) 재정의 분권화

북한은 그동안의 재정관련 개선조치로 기업소 재정과 국가예산의 연관성이 축소되었으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졌다.

#### 가. 기업소 재정의 분권화

북한은 1964년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를 구축한 이후 모든 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면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95년 및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의해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예산자금공급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기업소의 독자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북한의 김정일이 2001년 10월에 내각의 경제관리 일꾼들에게 내린 지시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이고 국가적인 주요지표에 대한 계획만을 작성하고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 규격지표들은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권한의 일부가 하부 위임되었다.

결국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예산자금지원이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기업소의 독자성이 인정됨으로써 기업소재정과 국가예산은 사실상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지방재정의 분권화

북한은 예산제도시행 초기부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나 북한 문헌<sup>193)</sup>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1973년부터 시행된 지방예산제는 새로운 의미의 사회주의 예산제도로써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하에 지방이 자체로 벌어서 자გი지방의 살림살이를 제 힘으로 꾸려나가는 지방재정 운영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은 중앙정부가 세우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지방예산에 지급하던 국가보조금을 없애고 수입·지출 내용을 일부 변경<sup>194)</sup>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73년 시행된 지방예산제는 계획권한 없이 집행의무만 분담하는 제한된 의미의 분권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193) 북한의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014면 등 참조.

194) 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도 없어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입원을 지방예산 소속 기관·기업소의 순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예산 소속 기관·기업소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있었다.

이에 비해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에서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시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부터는 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중앙정부는 지방별로 중앙예산에 납부할 금액만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계획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운 재정계획에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지 않게 되어 계획수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3) 예산기능 축소 및 은행의 역할 강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졌으며 지방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어 이제 북한의 국가예산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기능, 즉 국가의 고유기능 정도만 수행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예산은 국방, 국가관리, 사회보장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SOC 건설 등에만 사용되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1985년경부터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일부 보류하였다가 1995년 극도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2002년에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국가예산기능의 축소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행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 기업소는 그동안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던 기업의 경영활동자금을 이제는 자체자금 또는 은행 대부로 충당해야 하며 대부분 기업소는 자체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대부가 중요한 자금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은행 대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은행기능의 강화는 대부분의 체제전환국 개혁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 4) 계획관리방식의 변화 가능성

그동안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라 생산요소들의 배분을 결정지었을 뿐 아니라 공장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현실은 1990년대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제도적으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년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의 경제관련 개선조치로 이러한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주요 지표에 대한 계획은 중앙정부가 작성하지만 세부 계획은 개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계획의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기업의 경우 그동안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생산량과 번 수입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지방예산의 경우에도 세부계획 대신 지방예산이 중앙에 납부해야 할 중앙납부금만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계획관리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국가납부금, 즉 세금납부 상황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195)</sup>

---

195) 물론 북한 당국은 기업들이 번 수입, 즉 판매수입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오선희는 “현물지표별 계획은 무시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제품에 치우치는 편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현실이 번 수입에 많은 관심이 돌려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2. 재정 운용의 문제점

### 1) 자금조달의 문제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자금부족으로 에너지,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북한은 1995년의 유동자금 공급제도 폐지 및 2002년의 재정제도 개선조치 등을 통해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경우 거의 모든 자금을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부를 통해 충당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소는 자체자금이 크게 부족하며 은행도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장가동률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조차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북한의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이 중 일부를 자체자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은행의 경우도 일반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여 주민저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번 돈을 장롱 속에 모아두는 화폐퇴장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정부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여 퇴장된 유희화폐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재정관련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업경영의 독자성을 강화하였으나 기업 및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새로운 제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계획경제의 한계

북한이 2002년의 재정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계획경제의 틀을 완전

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이나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한계가 있다.

1995년 및 2002년의 재정관련 개선조치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졌으며 7.1조치에 의해 계획권한의 일부가 기업소에 하부 위임되는 등 기업경영의 독자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번 수입 목표와 번 수입 중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국가기업이득금 납부비율이 국가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등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업경영의 독자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번 수입 계획수행률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번 수입 계획을 높이 설정하여 기업이윤의 대부분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기업의 내부유보는 사실상 어렵게 되며 따라서 기업은 정부의 간섭을 무시할 수 없고 기존의 관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재정관련 제도 개선이 북한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은행기능의 한계

북한은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기능 축소 및 은행기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은행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재정이 담당하던 기능을 금융이 담당하도록 재정관련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대출 재원도 부족하고 대출을 위한 기업심사기능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의 자금조달 및 대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조치 없이 은행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재정관련 개선조치로는 기업의 생산활동지원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출심사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대출은 부실대출 우려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업은행법의 제정으로 일반 공민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그 설립과 정착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상업은행이 설립되더라도 예금수신기능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적 기능을 담당한 금융기관에 대한 공민들의 선입견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재정 운용의 법제적 과제

북한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금의 문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개혁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개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점진적인 개혁과제들을 수행한 결과 이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추진해야 할 재정관련 제도의 추가적인 개혁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상업적 은행기능의 정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상업적 은행기능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퇴장된 유희화폐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해야 하며 은행의 신용창조기능 인정 등을 통해 대출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제고하여 부실대출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은행법이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은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주민들로부터 저금을 받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통한 주민 저축은 낮은 이자율과 예금의 인출제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직접금융이나 개인에 대한 대부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등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은행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 차단 등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주민들로부터의 저금도 부족하여 대출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은 은행의 재정기능 축소와 은행 고유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재정제도 개선의 성과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법에 보장된 예금 및 이자 지급과 비밀보장의 원칙 등의 준수와 더불어 예금 및 대출 기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법제적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 2) 최근 추진한 개혁의 보완

### 가. 변 수입 분배비율의 일원화

북한의 기업들은 재정관련 제도개선 이후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부분 자금을 자체자금 및 은행 대부로 충당하는 한편 기업이윤의 내부유보가 확대되었으며 내부 유보비율도 변 수입 기준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변 수입 계획이 국가계획에 의해 정해지며 기업의 내부유보비율은 변 수입 계획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sup>196)</sup> 결

196) 변 수입을 국가기업이득금과 기업소가 쓸 자금으로 나누는 비율은 당과 국가의 재정정책에 의하여 규정하게 된다. 그것은 기업소가 쓸 자금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평균생활비가 생산실적과 노동생산능률, 축적률 및 소비율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규정되는 것과 많이 관련된다.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 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국 기업이윤의 내부유보비율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번 수입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국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가 달라지는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물론 공장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노동자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윤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한 기업평가와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번 수입 분배비율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번 수입 분배비율의 일원화는 세금제도 부활을 통해 세율을 법제화하여 기업에 대한 분배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 없는 나라라는 위상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

북한은 재정관련 개선조치를 통해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을 상대적으로 분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계획 작성권한의 일부를 기업에 위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김양호는 계획작성, 가격결정, 자재구입 및 생산물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전에 비해 기업소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197)</sup> 이는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분적인 자율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극심한 자금난 및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북한 현실에서 자금과 원자재를 정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못해 경영상 자율권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2002, 41면.

197) 김양호,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하며 중국이 개혁초기에 추진했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소유제의 도입 등 법제적인 조치도 부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결론: 북한 재정법제의 과제

### 제 1 절 사회주의국가의 재정개혁과 북한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 도입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들과 같은 급진적 체제전환을 겪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 체제전환을 거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개방의 과정 그리고 법제도적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이 어떠한 과정을 밟을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은 기존 공산당의 지배 하에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경험하지 않고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북한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북한이 정치권력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이 걸어간 노선을 채용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2007년 10월 김영일 북한총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어 현재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개혁(도이모이)정책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농업과 경공업으로 전환,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환율과 금리 등에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대외정책을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아세안 및 서방선진국으로 전환, 소유형태 다양화, 국유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의 저항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법체제도 개혁이념에 맞게 정비되었다.

베트남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재정부문에서도 많은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개혁조치의 핵심내용은 자원배분에서의 시장기능 도입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제개혁으로 요약된다. 먼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정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정부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해 각종 조세의 신규도입,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간 동일과세, 중앙과 지방 조세행정체도의 확립 등을 추진하였다.<sup>198)</sup> 즉, 베트남정부는 세입 및 세출구조를 전면 재조정하였는데 세입측면에서 1989년까지는 국세로서 농업세만 있었으나, 1990년 이후 영업이윤세, 개인소득세, 천연자원세, 농지사용세,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를 도입하여 세수증대를 꾀하였다. 세출의 경우, 국유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을 삭감하고 비효율적 국유기업은 정리, 통합함으로써 세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sup>199)</sup>

그리고 금융부문에서도 1988년 상업은행제도를 도입하고 베트남 국가은행이 상업은행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단일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갖는 국가은행과 일반상업은행으로 이원화되었다.<sup>200)</sup> 이러한 베트남의 개혁정책과 최근 북한이 보여준 개혁조치들은 가격의 현실화, 국유기업의 자율성 확대, 상업은행의 도입 등 일견 유사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조치들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베트남의 재정개혁을 포함한 개혁정책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이 함께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부문 즉, 외국투자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사유재산권의 확대, 기업의 사유화, 외국투자의 적극적 유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는 세원

198) 오인식,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호, 2004. 5, 별책본 11면.

199) 오인식, 앞의 논문, 같은 면.

200) 오인식, 앞의 논문, 같은 면.

자체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반면,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의 제한적 인정, 국영기업소체제의 고수, 고립적 경제특구의 설치 등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기업소와 국민들이 소유한 내부적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소극적 개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재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 제 2 절 북한 재정법제의 과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재정법제의 일련의 제·개정과 회계법 도입은 7·1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과정 중 하나로서 재정위기의 극복을 목표로 하였다.

즉, 경제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국가가 모든 경제단위들의 재정계획을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독립채산제 등 자율적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대신 재정에 대한 통제제도를 정치하게 구성하는 한편, 회계법 제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번 수입’ 중에서 국가납부 몫으로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재정부문에서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국내의 절약예비를 철저히 동원하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예산지출보다 예산수입에 재정수지의 기준을 두기 위하여 연성예산제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법에서 공공부문의 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것은<sup>201)</sup> 아직까지 ‘현금주의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보다 앞선 제도

201) 북한에서 부기를 적용분야에 따라 기업소부기, 기관부기 및 가계부기로 구분되고, 농업협동화시기에 단식부기의 한 형태인 약식부기와 간이식부기가 협동농장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부기관 및 기업소에서는 모두 복식부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제4집, 1995. 5, 30면 참조.

인 것으로 생각된다.<sup>202)</sup>

그러나 재정법제의 전반적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재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어 있는 여러 수단들에 관한 제도적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정법상에 국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견상 지방채의 형태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sup>203)</sup>

그러나 국방비의 비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자금수요의 증가 등 재정지출의 증가로 균형예산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입의 증대나 발권만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추

---

202) 우리 나라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혁신과제로서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2008년 이후에나 『정부회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203) 북한은 국채의 발행을 자본주의제도 하에서의 근로자 착취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일시 부족되는 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 현상이며, 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는 유희화폐자금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동원이용하는 형태로서 본질상 저금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208면 참조. 따라서 북한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인민생활공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추첨에 의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정정예잔제도의 도입도 재정 운용의 융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베트남의 재정개혁과 같이 세금제도의 명시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세금제도를 두고 있으나, 북한지역의 기업소와 공민에 대해서는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 무역편차이득금, 이익배당금, 개인수입금 등 조세와 유사한 수입금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조세제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재정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번 수입 분배비율의 일원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번 수입 계획이 당과 국가의 재정정책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정해지며 기업의 내부유보비율도 번 수입 계획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수요를 맞추는 데는 용이할지 모르나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심히 제약받게 된다. 번 수입 분배비율의 일원화는 세금제도를 직접적으로 부활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지도통제적 재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는 재정법과 회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감독통제기관과 통제수단이 난립하게 되면 결국 시간, 인력 및 경제적 낭비로 인해 비효율성만 더욱 노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재정 및 회계에 대한 통제는 회계검증 및 회계감찰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고, ‘재정총화’, ‘회계분석’,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 등 세 가지는 ‘재정총화’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새로 도입된 상업은행은 재정기능과 완전히 분리하여 소비자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17년이 지난 1995년에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업무영역의 분리를 완성하였지만, 초기에는 국가 재정과 은행자산이 구분되지 않아 상업은행의 독자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재정과 금융개혁의 추진에 많은 난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국유기업인 상업은행의 자산을 이용하여 충당한다든지, 상업은행이 상업적 기능 이외에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진정한 금융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법문 및 법령용어의 불명확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법령용어의 모호함 또는 비통일적 사용과 관련이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지칭하는 명칭만으로도 재정법 상에는 ‘해당 기관’(제26조 및 제28조), ‘해당 상급기관’(재정법 제47조), ‘해당 재정기관’(재정법 제50조),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재정법 제52조) 등으로, 회계법 상에는 ‘해당 지방 재정기관과 상급기관’(회계법 제23조제1호), ‘해당 상급기관’(회계법 제24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회계법 제31조 및 제40조), ‘회계 검증기관’(회계법 제33조 내지 제36조), ‘해당 감독통제기관’(회계법 제45조) 등으로 제각각 표현하고 있다. 국가예산수입법에서도 제4절 사회보험료에 관한 규정들에서 ‘협동단체’(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와 ‘협동농장’(제43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물론 전후 조문과의 문맥상 파악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법령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법문의 개선과 법령용어의 명확하고 통일적인 사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법과 회계법 상의 일부 조문상의 중복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법과 회계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에 있지만, 상위법과 시행규정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개 조문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있는 것은 입법기술상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3 절 남북한 교류협력과 재정적 과제

북한의 재정수입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남북한 교류협력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을 들 수 있다. 2006년도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은 2억939만불,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은 7,048만불로 합계 2억 7,987만불에 달한다.<sup>204)</sup> 이는 북한의 2006년도 예산 약 30억불<sup>205)</sup>의 1할에 육박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06년까지의 지원 총액은 16억 4,484만불로 북한 1년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둘째, 금강산관광지구를 통한 수입을 들 수 있다. 금강산관광을 위해 현대아산이 북한측에 지불하는 1인당 35달러의 입장료와 관광시설 수익금 및 인건비 등도 북한측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무시 못 할 액수이다.<sup>206)</sup>

셋째,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개성공단 관련 수입인데, 토지이용료를 비롯해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등 각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내게 될 각종 세금에 대해 북한측은 재정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4)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자료 참조.

205) 2006년도 추정예산을 북한의 공식환율(1달러당 약 140원)로 나누어 환산하였다. 북한의 비공식환율은 공식환율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6) 1998년 이후 2007년 1월까지 누적 관광객수는 14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남한측의 무상지원과 특구 개발을 통한 수입, 그리고 직접투자 등이 북한 재정의 공식적인 수입으로 계상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북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남한측으로서도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재정에 대한 기여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한 매력을 느끼는 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요인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남한측으로서도 대외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의 하나로서 대북한 교류협력은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한 대외투자의 효용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재정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활력 유지는 미구에 발생할 통일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재정의 개선은 여러 부정적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정확한 재정규모가 여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고, 북한의 공식환율이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실세환율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이도 그 만큼 불투명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고일동, □□북한의 예산구조와 최근의 재정실태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9.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79년간 동서 독관계 발전 중심□□, 1982. 9.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보고서 95-15,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994.
-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연구□□ 한은조사연구 2002-3, 한국은행, 2002. 4.
- \_\_\_\_\_,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 박정동,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_\_\_\_\_,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한국법제연구원, 1999.
- 박진, □□북한재정의현황과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법무부, □□북한법연구 I: 통치기구·사법제도□□, 1985.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1997.
- \_\_\_\_\_,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 12.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1995.
- 법제처,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1999.
- \_\_\_\_\_, □□북한법제개요□□, 1991.
- \_\_\_\_\_, □□북한의 합영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_\_\_\_\_, □□중국법제개요□□, 1990.
-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1991.
- \_\_\_\_\_, □□북한총람□□, 1994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손희두,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손희두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 손희두 편, □□북한의 법령 및 법규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법규 -□□, 한국무역협회, 1998.
- 이일영 외,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5.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헌법 연구 -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자료 -□□, 국민대출판부, 1998.
- 장명봉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5.

- 전홍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자료 93-05,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수영,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통일연구원, 2007.
- 최의철,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최종고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최준욱 외,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통일원, □□동서독 경제협력 사례집□□, 1995.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한국법제연구원, 1994.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2005. 1. 11.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1. 4.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1.
- 황의각, □□북한경제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2.
- 강현철, “남북한 및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한국국제지역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5. 16.

참고문헌

- 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제4호, 1993 겨울.
- 김광수, “국제회계기준(IAS)의 발전”,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30집, 2004. 6.
- 김동률, “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의대론집□□ 제26집, 2003. 2.
- \_\_\_\_\_,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회계제도의 발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국제경영론집□□ 제18집, 2003. 2.
- 김병호, “대북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회계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북약경영연구□□ 1호, 1995. 2.
- 김병호,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3호, 2004. 12.
- \_\_\_\_\_, “북한회계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제15호, 2001. 6.
- 김정만,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제21권 제7호, 2002. 7.
- 김형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과학연구□□ 제29집, 2003.
- 김확열, “사회주의에서 회계의 역할 -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회계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2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 2.

- \_\_\_\_\_, “중국 회계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7집  
인문사회과학편, 2002. 8.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 박영희, “북한 국가예산의 변동추이(1948-2001)”, □□사회과학논집□□ Vol. 25,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  
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 배종렬, “북한 외자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  
하여”,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6권 1호, 1995.
- 백진현,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한 통상규제”,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 1992.
-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  
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3.
- 송동섭, “중국 회계제도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  
사학□□ 제15집 제3호, 2000. 12.
-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1995. 8.
- 신현윤,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방향 - 동·서독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_\_\_\_\_, “북한의 기업소제도”, 법조협회, □□법조□□ 530호, 2000. 11.
- 오인식,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  
으로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호,  
2004. 5.

참고문헌

-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 -”,  
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2.
- 윤덕룡,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7·1경  
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정책  
연구 2003-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윤병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향후과제 - 중국 및 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0월호, 2005. 10.
- 윤상직, “북한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  
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제도  
실천과제 연구□□, 1993.
- 이재실, “사회주의시장경제하의 중국기업회계제도: ‘기업회계준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제8권 제2호,  
2001. 12.
- 이정호, 김완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서울  
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론집□□ 제37권 4호. 2003. 12.
- 이종운, “정부회계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감사원, □□감사□□  
통권 제81호, 2004. 1.
- 이주성, “중국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충청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6호,  
1990. 12.
- 이천표, “‘투명한 회계기준’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  
론집□□ 제43권 제1·2호, 2004. 6.

- 장명봉,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주평화 통일정책자문회의 정책과제, 2002.
-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_\_\_\_\_, “북한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고려대 법학연구소, □□북한법률 행정론집□□ 제10집, 1995.
- 정민수, “남·북한 재정기능과 북한재정의 발전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0.
- 정영화, “개성경제특구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남북법제연구반 전문가초청간담회 발표논문, 2003. 11. 13.
-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뉴스레터□□ 1999년 5월호.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 1993.
- \_\_\_\_\_,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령 분석 및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 최상문, “북한의 회계제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논총□□ 제4집, 1995. 5.
- 최상문, 김형건, “중국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상과대학, □□부산상대론집□□ 68호, 1997. 6.
- 최수천, 최순희,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연구”, 계명문화대학 산업개발연구소, □□계명연구론총□□ 제17집, 1999. 3.

## 참고문헌

- 한문성, “중국의 회계법과 회계준칙에 관한 고찰”, 서경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 □□산업경영연구□□ 제7호, 2000. 12.
- 함강국, “회계기준의 국제적 수렴에 대한 각국의 수용방안”, 신용보증 기금, □□보증월보□□ 제281호, 2004. 5.
- 황동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V): 금융 및 외화 관리”, 현대경제사회 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 2. 북한 문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2005.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
- 리원경, □□사회주의화폐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30□□, 1995~2001.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_\_\_\_\_,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5).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각 연도.
- 김남순, “대외무역에 따르는 국제결제를 잘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 2).
- 김두선, “소득과세와 그 특징”,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7.
- 김소영, “월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은행의 본신임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김양호,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과 가치공간의 합리적리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
- \_\_\_\_\_,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동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4.
- 김용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참 고 문 헌

- 김진주, “대외봉사기관, 기업소재정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로학철, “영예군인공장 류동자금 형성원천과 그 특성”,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리기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완성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리동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 리상조, “은행자원과 그 구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4).
-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번 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리원경, “나라의 화폐자원 관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
- \_\_\_\_\_, “사회주의 은행의 자금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_\_\_\_\_, “인민경제적자금수요해결의 원칙적방도”,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 \_\_\_\_\_,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재정과 금융의 융합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7.

- \_\_\_\_\_,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 리종열,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임무”, □□법학론문집 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리창혁, “화폐유통법칙의 작용영역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리철환, “사회주의사회에서 고정재산갱신자금의 형성원천과 그 특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리학철, “공화국경제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제50권 제1호.
- 림광남, “고정재산재생산의 자금원천보장에서 나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박성호, “새로운 국가예산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박재영,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의 중요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박춘화, “독립채산제기업소재정관리에서 국가적리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박홍엽, “국영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과 그 표현”,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백종삼, “사회주의국가예산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서영식, “사회주의로동보수제에서 국가와 개인의 리익에 대한 기업소 리익작용의 정확한 실현”,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참고 문헌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론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신도현,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 운영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2.
- 오선희, “거래수입금의 제정 및 적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_\_\_\_\_, “국가재정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 \_\_\_\_\_, “사회주의기업소자금의 성격”,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_\_\_\_\_,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_\_\_\_\_,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 원성돈, “경비예산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 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2.
- 정광영, “독립채산제기업소자체충당금과 그 적립리용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정영룡,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최영옥, “현 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2).
-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
- 함성준, “지방회계계산의 특징과 역할”,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2007.
- 홍성남, “현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홍영의, “대부수요계획 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_\_\_\_\_, “은행자원과 그 계획화에서 나서는 방법론적 문제”,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 \_\_\_\_\_, “재정규률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재정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2006.
- \_\_\_\_\_,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 3. 외국 문헌

-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東京: 明石書店, 1995).

참 고 문 헌

- 小島麗逸(編著), □□中國の經濟改革□□(東京: 勁草書房, 1988).
- 小村武, □□豫算と財政法□□(東京: 新日本法規, 2002).
- 金文成, “擴大發展している對外關係と外國人投資の展望について”,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年 5月號.
- Bailey, D., *Accounting in Socialist Countries* (London and Newyork: Routlege, 1988).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1997.
- Chung, Joseph Sang-ho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Appraisal and Prospects” in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1973.
- Lee, Joung-Koon, “North Korean Foreign Trade in Recent Years and the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Trad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V, No. 3, 1974. 10.